

新羅時代의 眞骨*

李 鍾 旭**

머리말

I. 眞骨身分의 編成과 그 起源

II. 眞骨身分의 社會的 構成

III. 眞骨身分의 維持

IV. 眞骨의 活動

V. 眞骨의 勢力基盤

VI. 眞骨集團 내의 勢力關係

맺음말

머 리 말

新羅의 骨品制는 독특한 신분제의 하나로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 골품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골품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신라사회의 정치조직, 친족제도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중에 골품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전자의 연구들에 의하여 골품제의 구조가 대체로 정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골품제의 실체가 아직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후자의 연구들에 의하여 골품신분에 따른 정치·사회적 제약과 골품제의 운영원리로서 친족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서도 골품제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골품제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분석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골품제의 기원, 구조, 운영원리 그리고 그 변천 등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골품제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 이 論文은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1983年 研究費支援에 의하여 研究되었음을 밝혀둔다.

** 西江大學校 文科大學 史學科 副教授

두가지 면에 걸친 연구는 결국 골품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골품제의 여러 측면 중 하나의 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골품신분의 각 신분층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도 할 수 있다. 이미 이같은 골품신분 중 몇개의 신분층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다.¹⁾ 그러면서도 신라 지배층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진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여가서는 진골신분에 대한 몇가지 의문을 풀어 보기로 한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진골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연구는 주로 진골신분의 성립문제, 관직·관등과 같은 정치조직과의 관계, 성골과의 관계(특히 성골·진골의 구별문제)를 비롯하여 왕위계승, 친족계승문제, 族降, 혼인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중에 진골에 대하여 다룬 것들이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 의하여 진골에 대한 해명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그 이해를 잘못 이끈 것도 있다.²⁾ 이에 진골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이해를 위하여 진골신분의 편성과 기원, 진골신분의 가족구성, 거주지, 혼인, 규모, 진골신분의 유지, 진골의 활동, 실력기반, 진골 내에서의 서열에 대하여 정리하고 끝으로 진골신분의 시대적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진골에 대한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진골 자체는 물론 골품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한걸음 진전하기를 바란다. 본고에서 잘못 정리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후일 수정·보충할 것을 기약한다.

- 1) 骨品制의 개별 신분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필자가 주목한 논문은 李基白의 “新羅 六頭品 研究”(『省谷論叢』 2, 1971; 『新羅政治社會史研究』(1974)이다. 그 밖에 聖骨身分이나 村主에 대한 연구도 있다. 그 중에는 拙稿 “新羅 中古時代의 聖骨”(『震檀學報』 50, 1980)도 있으나, 내용 중에 오해를 불러올 대목이 있어 그것을 이미 수정하여 발표할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 2) 필자는 “新羅 骨品制 研究의 動向”이란 미발표 別稿를 통하여 眞骨身分에 대한 기존연구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내용 검토와 문제점 지적을 생략할 수 있었다.

I. 眞骨身分의 編成과 그 起源

新羅 骨品制는 法興王 7년(520)에 8계층의 신분제로 편성되었다고 보아 왔다.³⁾ 이같은 골품제에는 물론 진골신분도 있었다. 이와 관련시켜「三國史記」에 나오는 斯多含에 대한 기록이 주목된다. 斯多含은 奈密(勿)王의 7세손으로 그의 父는 仇梨知 級淹이었다고 한다. 그는 眞興王대에 花郎이 되었는데, 異斯夫가 伽倻를 공격할 때 종군을 청하여 15·6세의 나이로 貴幢裨將이 되었다고 한다.⁴⁾ 斯多含이 異斯夫 밑에서 가야를 쳐들어간 시기는 眞興王 23년(561) 9월로 나오고 있다.⁵⁾ 그런데「三國史記」列傳에는 斯多含은 “系出眞骨”이라 되어 있다. 이로서 보면 斯多含의 집안이 眞骨인 것을 알 수 있다. 斯多含이 태어난 해는 545년이거나 546년이다. 그때는 斯多含 뿐 아니라 그의 父인 仇梨知도 진골신분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斯多含의 출생보다 25·6년 앞서 반포된 신라의 律令안에 골품제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다시 골품제 안에는 진골신분에 대한 규정도 있었던 점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이제 먼저 法興王 7년에 편제된 골품제도 중의 진골신분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하였나 알아 보기로 한다. 우선 關智를 시조로 하는 金氏族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法興王대에 이르게 되면 金氏族의 성원 수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金氏族의 성원 모두가 동등한 신분적 지위를 누린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는 필자가 이미 정리한 바와 같이 성골신분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는 진골신분을 가졌고 또 나머지 성원들은 그보다 낮은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金氏族 중 어떤 세력이 진골신분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하여진다.

3) 拙稿, “新羅 中古時代의 骨品制”, 「歷史學報」 99·100 合, 1983, pp. 33~38.

4) 金富軾「三國史記」44, 列傳 4, 斯多含條.

5) 「三國史記」4, 新羅本紀 4, 眞興王 23年條.

金氏族 中에서는 13대 味鄒王과 17대 奈勿王이 주목된다. 金氏族 中에서 이들 두왕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들을 볼 수 있다.

1) 居柒夫^{或云荒宗} 姓金氏 奈勿王五世孫 祖仍宿角干 父勿力伊淦…… 遂遷國 返本從仕職 至大阿淦 眞興大王六年乙丑承朝旨集諸文士 修撰國史 加波珍淦…… 眞智王元年丙申 居柒夫爲上大等 以軍國事務自任 至老終於家 享年七十八 (『三國史記』 44, 居柒夫傳)

2) 異斯夫^{或云蒼宗}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略王時爲沿邊官……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軍主…… 眞興王在位十一年 大寶元年…… 命異斯夫出兵…… (『三國史記』 44, 異斯夫傳)

3) 斯多含 系出眞骨 奈密王 七世孫也…… (『三國史記』 44, 斯多含傳)

4) 金歆運 奈密王八世孫也 父達福迺淦…… 永徽六年 太宗大王憤百濟與高句麗 梗邊 謀伐之 及出師 以歆運爲郎幢大監…… 況公新羅之貴骨 大王之半子…… 歆運拔劍揮之 與賊鬪 殺數人而死 大王聞之傷慟 贈歆運破位一吉淦 (『三國史記』 47, 金歆運傳)

5) 宣德王立 姓金氏 諱良相 奈勿王十世孫也 (『三國史記』 9, 宣德王 즉위조)

6) 元聖王立 諱敬信 奈勿王十二世孫 (『三國史記』 10, 元聖王 즉위조)

7) 金后稷 智證王之曾孫 事眞平大王爲伊淦 轉兵部令…… (『三國史記』 45, 金后稷傳)

8) 金仁問 字仁壽 太宗大王第二子也 (『三國史記』 44, 金仁問傳)

9) 金陽 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 (『三國史記』 44, 金陽傳)

10) ……△運 俗姓金氏 鷄林人也 其先降自聖韓與於郎勿…… (毗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 朝鮮金石總覽, pp. 135~136)

11) 大師法諱利嚴 俗姓金氏 其先雞林人也 考其國史實 星漢之苗 遠祖世道凌夷 斯慮多難 偶隨萍梗 流落龍川 父章深受雲泉 因寓富城之野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 朝鮮金石總覽, p. 126)

위의 사료 외에도 金氏族의 시조가 關智였다는 기록이 있다.⁶⁾ 한편 위의 기록에 나오는 聖韓(10)과 星漢(11)은 제 13대 味鄒王이었다고 고찰한 바

6)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脫解尼師今 9年條 및 一然 『三國遺事』 1, 紀異 1, 金關智條.

있다.⁷⁾

이에 위의 기록들을 보면 關智의 후손으로서 후대인들에 의하여 中始祖로 파악된 사람들 중에 星漢(味鄒王)(10, 11), 奈勿王(1-6), 智證王(7), 太宗武烈王(8, 9) 등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그중 聖骨이 盡한 상태에서 즉위한 太宗武烈王이나 그 후손들인 金仁間(8), 金陽(9) 등은 모두 진골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金后稷은 智證王의 증손으로 되어 있는데(사료 7) 그의 祖는 法興시 聖骨集團에 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金后稷은 眞平王대에 이르게 되면 이미 聖骨에서 방계화하여 眞骨身分을 갖게 되었다고 해야려진다. 실제 그가 兵部令까지 오른 것은 그 신분이 眞骨이었던 것을 나타내준다. 이로서 智證王의 후손들 중에 聖骨集團의 범위를 벗어나 방계화한 자들이 眞骨로 되었던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면 奈勿王의 후손들은 그 신분이 어떠하였을까. 그중 奈勿王의 7세손인 斯多舍은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분명히 眞骨身分을 가졌다. 奈勿王의 8세손인 金歆運은 郎幢大監으로 죽은 후에 一吉養으로 贈位되었다(사료 4).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金歆運이 진골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를 貴骨이라 했고 大王의 半子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신분은 眞骨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斯多舍과 金歆運이 각기 奈勿王의 7세손과 8세손으로 진골신분을 가졌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眞興王대에 國史를 편찬하였고 眞智王 元年에 上大等까지 올랐던 居柒夫(사료 1)도 奈勿王의 5세손으로 진골신분을 가졌다고 해야려진다. 그리고 異斯夫(사료 2)는 智證王대에는 奈勿王의 4세손으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왕족 신분층에 속했겠으나, 이때는 아직 진골이 편성되기 이전으로 法興王대에 이르러 비로소 진골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居柒夫를 奈勿王의 5세손으로, 異斯夫를 奈勿王의 4세손으로 표현한 「三國史記」기록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즉, 그것은 居柒夫와 異斯夫가 가지는 왕실내에서의 위치를 분명히 해줄 뿐아니라, 나아가서 그들

7) 拙著「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1980, pp. 133~140.

이 진골신분임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이들 奈勿王의 후손들은 그후 번성하였고, 그들 중에는 智證王系 집단이 있어 法興王대부터는 그들 집단에서 성골을 배출하게 되었고, 세대를 거치며 방계화하는 집단은 진골로 신분이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智證王系 후손집단 중에는 金春秋가 眞骨로서 왕이 되었고, 그후 그 후손 집단의 존재는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36대 惠恭王 이후에는 다시 奈勿王의 10세손인 37대 宣德王과 奈勿王의 12세손인 38대 元聖王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宣德王과 元聖王은 모두 眞骨身分을 가진 왕들로, 奈勿王의 10세손과 12세손들 중에도 진골이 된 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단 奈勿王의 후손들이 진골신분을 가졌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필요조건 정도가 된다. 실제로는 族降 등의 장치를 통하여 奈勿王의 후손이라 하여 모두 진골신분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 보여진다. 그 결과 眞空大師는 그 조상을 聖韓(味鄒)·郍勿(奈勿)에서 찾고 있으면서 신분적으로는 진골이기보다 6두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것은 그의父가 6두품이 많이 차지하던 執事侍郎이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⁸⁾ 그렇더라도 法興王이 진골신분을 편제할 때에는 聖骨을 제외하고 奈勿王의 후손들은 모두 眞骨로 편제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法興王이 골품제를 편성할 때 진골집단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奈勿王은 法興王의 高祖가 된다.⁹⁾ 이에 法興王대에 진골로 편제된 세력은 奈勿王의 4·5대손 정도에 해당하는 집단들이 아니었나 한다.

한편, 法興王이 골품제를 편성할 때 그 밖의 金氏族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중에는 實聖王系와 같은 金氏族도 있다. 그러나 實聖王

8) 위에 든 眞空大師의 경우는 적합한 예가 안 될 수도 있다. 그에 비해 朗慧和尚의父이며 진골에서 族降하여 6두품이 된 範濟이 오히려 그러한 예에 맞을 것 같다(“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p. 74 참조).

9) 拙著, 앞의 책, 1980, pp. 89~94 참조.

은 訥祗王에 의하여 일단 제거되었기에 진골신분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關智·味鄒系 후손들이더라도 奈勿系 직계 후손의 범위를 벗어난 집단은 진골신분을 갖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골품제 편성시 진골의 기준은 奈勿王의 후손이고 성골의 기준은 智證王의 후손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성골은 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왕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성골집단을 구성하였고, 거기서 방제화한 세력은 진골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¹⁰⁾

다음은 朴氏族 중에는 어떤 세력들이 眞骨身分을 가졌나 보기로 한다. 新羅下代의 53대 神德王, 54대 景明王, 55대 景哀王은 朴氏로서 왕위에 올랐다. 이들은 그 신분이 眞骨이었기에 왕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골품제 편성시 朴氏族 중에도 진골신분을 가진자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진골신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기서 中古時代의 기록에 나타나는 朴氏勢力에 대하여 주목할 수 있다.

- 1) ①智證麻立干立 姓金氏…… 妃朴氏延帝夫人登欣伊淪女(『三國史記』 4, 智證麻立干 즉위조)
- ②第二十二 智訂麻立干…… 妃迎帝夫人 儉攬代漢只登許^{一作}△△角干之女(『三國遺事』 1, 王曆 1, 第二十二智訂麻立干)
- ③第二十二 智哲老王 姓金氏…… 王陰長一尺五寸 難於嘉綱 發使三道求之…… 此部相公之女子 洗滌于此……(『三國遺事』 1, 紀異 2, 智哲老王)
- 2) 法興王立 諱原宗^{冊府元龜}姓募名泰 智證王元子 母延帝夫人 妃朴氏 保刀夫人(『三國史記』 4, 法興王 즉위조)
- 3) ①眞興王立 諱多婆^{或作深}麥夫 時年七歲 法興王弟葛文王立宗之子也 母夫人金氏法興王之女 妃朴氏思道夫人 王幼少 王太后攝政(『三國史記』 4, 眞興王 즉위조)
- ② 第二十四 眞興王……母只召夫人 一作息道夫人朴氏 牟梁里英失角干之女(『三國遺事』 1, 王曆 1, 第二十四眞興王)
- ③ 第二十五 眞智王……母朴英失角干之女 息途^{一作色}刀夫人 朴氏(『三國遺事』 1, 王曆 1, 第二十五眞智王)
- ④ 妃思刀夫人朴氏 牟梁里英失角干女(『三國遺事』 3, 興法 3, 原宗興法)

10) 拙稿, 앞의 논문, 1983, pp. 50~55.

4) 第二十五 眞智王…… 妃知刀夫人 起烏公之女 朴氏(「三國遺事」 1, 王曆 1, 第二十五眞智王)

위의 사료는 智證王에서 眞智王까지 왕들의 妃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智證王에서 眞智王에 이르는 4명의 王妃는 모두 朴氏族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朴氏王妃의 父 중에는 角干(사료 1 ①②, 3 ①②③) 또는 伊滄(1①)까지 올랐던 인물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 왕비를 배출하였던 朴氏族은 적어도 眞骨身分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眞德女王的 母도 朴氏였다고 한다.

第二十八 眞德女王 金氏 父眞平王之弟國其安葛文王 母阿尼夫人 朴氏 奴追△△△ 葛文王之女也 或云月明 非也(「三國遺事」 1, 王曆 1, 第二十八眞德女王)

위의 기록을 보면 眞德女王的 母의 父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당시 그는 葛文王 자리에 있었다. 이에 眞德女王的 母의 父도 진골신분을 가졌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葛文王은 王族 및 王妃族(혹은 前王族)의 독립된 氏族 및 家系の 장이 되었다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¹¹⁾ 이로써 보면 朴氏族으로서 葛文王 지위에 올랐던 자가 있고, 그러한 집안의 성원은 진골신분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赫居世의 후손들 중에는 麻立干時대에 그 세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中古時代에 들어서면서 진골신분을 가지게 된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中古時代에 이르면 赫居世 후손들의 규모는 크게 늘어났지만, 그중 진골신분을 유지할 수 있던 집안은 奈勿王系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진골집단보다 그 규모가 적었다고 여겨진다. 단지 숫적으로는 적으나 진골신분을 이어가는 朴氏族의 집단이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中古時代 朴氏勢力에 대한 李基東의 견해가 있다. 그는 前間恭作的 견해를¹²⁾ 이어받아 奈勿系 親族集團 중 智證系 直系와 나머지를 구별하고 있다. 그는 奈勿系集團 중 智證系 直系는 金姓을 사용하였으며 왕

11) 李基白, 앞의 책, 1974, p. 18.

12)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の名について”, 「東洋學報」 15~2, 1922, p. 204.

위계승권을 가졌고 나머지 집단은 왕실 밖(外)에 있어 朴氏姓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中古時代에는 奈勿系 朴氏와 奈勿 이전 金氏部族과 연맹관계에 있던 朴氏部族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단 후자는 奈勿王 이후 왕실과 떨어져 왕비족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中古時代 王妃族은 奈勿系 氏族集團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결국 奈勿王系 親族集團 내부에 金氏와 朴氏 兩部族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¹³⁾

前間恭作이나 李基東의 위와 같은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中古時代에 王妃를 배출한 朴氏들이 奈勿系 중 智證系의 밖에 위치한 집단이라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사료에서 볼 수 있듯, 奈勿王의 5세손인 居柒夫, 7세손인 斯多含을 비롯하여 奈勿王의 후손들이 金氏姓을 가진 것으로 나오고 있어, 李基東의 견해는 따를 수 없다.¹⁴⁾ 따라서 中古時代에 왕비를 배출시킨 朴氏族은 金氏族이 나뉘어져 생긴 것이 아니고, 赫居世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특히 前間恭作의 견해는 朴氏族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 나온 것이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장된 것이다.¹⁶⁾ 따라서 이같은 주장을 따른 李基東의 견해는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13) 李基東, “新羅 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震檀學報』 40, 1975;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0, pp. 100~102.

14) 물론 李基東은 異次頓의 姓이 朴氏로 나오는 기록(『三國遺事』 3, 興法 3, 原宗興法·厭觸滅身條)과 奈勿王의 4世孫인 異斯夫의 姓이 朴으로도 나오는 기록(『三國遺事』 1, 紀異 1, 智哲老王條)을 토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앞의 책, 1980, pp. 99~100). 그러나 위의 인물들의 姓이 두가지로 나오는 이유는 잘못된 것이거나 그 조상 중 외가의 뛰어난 자의 姓을 따르기도 하여 위와 같이 되었을 수도 있다(金穀圭, “新羅 母系制 社會說에 대한 檢討”, 『韓國史研究』 23, 1979, pp. 53~54).

15) 李基東은 “奈勿王 이전 金氏部族과 聯盟關係에 있었던 朴氏部族의 구성원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일단 상상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中古時代 朴氏王妃의 혈통이 소위 朴氏部族集團보다는 奈勿王系 氏族集團內的 성원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1980, p. 101). 이에 대해서는 拙著(앞의 책, 1980, pp. 209~210)에서 언급한 바 있다.

16) 朴字는 金의 朝家에 대하여 野에 있다는 뜻으로 보는 前間恭作의 주장(앞의 논문, 1922, p. 204)대로라면 朴은 朴과 통한다는 것이 되겠다. 그러나 朴과 朴을 통하는 것으로 보기에 언어학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신라인들

한편 脫解王의 후손집단인 昔氏族은 진골신분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昔氏族으로 기록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은 제 16대 訖解王(310-356)이 있다. 그리고 實聖王(402-417)의妃의父인 昔登保阿干이 있다. 그 후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昔氏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昔登保阿干이 實聖王대에 활약을 하였다고 보더라는 昔氏族이 활약한 시기는 律令頒布보다 1세기 이상 앞서 있다. 따라서 昔氏族은 대체로 麻立干時代에 들어 오면서 그 세력을 상실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도태되었다고 해야 하겠다. 그 결과 昔氏族으로서 진골이 된 세력은 없었다고 믿어진다.¹⁷⁾

위에서 본 진골집단의 성원들은 신라의 국가형성·발전과정에 왕을 배출하였던 3氏族에 한한 것이다. 그런데 신라시대의 진골세력은 실제 위의 3씨족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신라는 계속된 정복과정에 신라에 병합된 나라의 왕과 그 가족을 王京으로 이주시켜 살도록 한 바 있다.

1) 七年春二月 骨伐國王阿音夫 率衆來降賜第宅・田莊安之 以其地爲郡(「三國史記」2, 助賁尼師今 7년)

2) 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予武力仕至角干(「三國史記」4, 法興王 19년)

위의 기록 중에는 骨伐國王 阿音夫가 무리를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하여 오자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집과 땅을 주어 살게하였다는 것이 있다. 그리고 金官國의 왕이었던 金仇亥도 신라에 來降하였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王京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다. 그런데 「三國史記」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律令을 반포하여 骨品制를 편제할 때까지 斯盧國・新羅에 병합된 나라의 왕과 그 무리들이 王京으로 이주한 예는 더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 마을 어떻게 발음하였는지 알아야만 하고 또 그것을 현재의 밖(外)과 같은 의미로 썼는지도 확인이 되어야하나 그러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착상을 따를 수 없다.

17) 李德星은 昔氏系統의 국소수가 眞骨이 되었다고 하였다(「朝鮮古代社會研究」, 1949, p.12). 그러나 그는 위에서와 같은 昔氏族의 몰락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러나 그들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바꾸어 말하여 王京으로 이주한 피병합국의 왕과 그 가족의 규모도 적었고 그들이 신라 지배체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骨品制의 편성 이전에 신라의 수도로 이주된 피병합국의 주민들 중에 후일 진골로 편입된 세력은 거의 없지 않았나 한다. 그것은 골품제 편성 이전까지만 하여도 신라의 최고 지배세력은 朴氏族·昔氏族·金氏族의 3씨족들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金官國의 마지막 왕인 金仇亥가 신라에 來降한 후 그들 일족에 대한 신분편제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래 金仇亥는 法興王 19년에 그의 세아들과 함께 신라에 항복하였으며 이때 그들을 대체로 진골로 편입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당시 신라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사회·정치적 비중이 처음부터 컸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金仇亥의 季子인 武力은 신라를 위해 공을 세운 바 있다.

祖武力爲新州道行軍總管 嘗領兵獲百濟王及其將四人 斬首一萬餘級 父舒玄 官至蘇判 大梁州都督安撫大梁州諸軍事(『三國史記』 41, 金庚信 上)

위의 기록에 의하면 武力은 行軍總管(軍主)이 되어 百濟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음 자료에도 나오고 있다.

十五年 秋七月 修築明活城 百濟王明禰與加良 來攻管山城 軍主角于德 伊浹耽知等 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 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 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三國史記』 4, 眞興王 15년)

武力은 新州軍主로 임명된 후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對百濟戰에서 승리하여 百濟王을 살해하고 佐平 4인과 많은 士卒를 斬하는 공을 세웠다. 이것은 당시의 어떠한 戰功보다 큰 것이었다. 이때 武力이 거느린 군대가 金官加耶系의 주민들로 구성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¹⁸⁾ 오히려 신라 정부

18) 井上秀雄은 후일 金庚信이 남으로 金官加耶의 구 영토를 확보하고 和白에 참가하여 金春秋를 구원했다고 하였다(『新羅政治體制의 變遷過程』, 『新羅史基礎』

에서는 武力이 金官加耶의 주민을 지배하는 것을 전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金武力은 군사적인 공을 세웠고, 그의 집안은 하나의 군사적 elite 집안으로 자리잡아 갔다고 여겨진다. 그후 武力의 아들인 舒玄도 眞平王 51년에 大將軍으로 되어 龍春과 함께 高句麗를 공격하여 공을 세운바 있다.¹⁹⁾ 舒玄도 역시 군사적 elite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立宗葛文王의 아들인 肅訖宗의 딸과 어렵게 혼인을 하였다.²⁰⁾ 이는 당시 舒玄의 집안이 신라사회 안에서 일정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肅訖宗의 女인 萬明夫人은 銅輪太子·眞智王과는 4촌간이 된다. 이로서 金仇玄의 孫인 舒玄이 王族의 女를 부인으로 맞이 하였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일단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金仇玄·武力·舒玄으로 이어져 내려온 金庾信의 집안에서는 위와 같이 사회적·군사적인 면에서 활동을 하여 그 지위를 성장시켰다. 그런데 金庾信 자신은 그러한 면에서 더욱 뛰어난 인물이 되고 있다. 金庾信은 그의 누이 동생을 金春秋와 혼인시켰다.²¹⁾ 그리고 金庾信은 金春秋의 3女였던 智炤夫人을 아내로 맞이하였다.²²⁾ 金庾信은 金春秋와의 중부된 인척 관계를 맺어 신라 왕실안에서 차지하는 그의 지위를 굳힐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金庾信은 그의 祖父로부터 성장시킨 군사적 elite로서의 지위를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서 金庾信 당대까지는 그의 집안이 주요한 진골집안의 하나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金庾信의 집안도 그의 死後에는 점차 王族들의 견제를 받게 되었다.²³⁾ 金庾信의 嫡孫이라하는 允中의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된다. 그후 金庾信系 家系는 점차 신라 중앙정부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잃어

研究」1974, pp. 44~451). 그러나 그때까지 金庾信이 加耶地域 주민을 지배했다는 근거는 없다. 여기서 武力이 거느렸던 군대도 新州의 州兵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19) 「三國史記」4, 新羅本紀 4, 眞平王 51年條.

20) 「三國史記」41, 列傳 1, 金庾信 上.

21) 「三國遺事」1, 紀異 2, 太宗春秋公.

22) 「三國史記」43, 列傳 3, 金庾信 下.

23)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1958; 앞의 책, 1974, pp. 251~252.

가게 되었다. 이로서 보면 加耶系 중에서 金官國系의 王族 중 일부 세력이 그들이 가지는 군사적 elite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3국통일에 큰 공을 세워 그 지위를 굳힐 수 있었으나 이어 사회·정치적 지위를 왕의 근친들에게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

한편 加耶諸國의 왕족중에는 金官國 王族의 일부 집안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金仇亥에서 金庾信까지 내려오며 신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을 뿐, 신라에 끝까지 대항한 大加耶의 왕족들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야려진다. 결국 辰韓小國과 加耶를 정복할 때까지 병합된 나라의 왕족으로 신라 중앙정계에 진출한 세력의 수는 얼마 안되고 골품제 편성시 진골성분을 가질 수 있던 집안은 金仇亥·武力·舒玄·金庾信으로 이어지는 가계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百濟·高句麗를 병합한 신라에서는 그 지배세력을 어떻게 골품제하에 편입하였을까. 百濟人으로서 진골로 편입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²⁴⁾ 그에 비해 高句麗人 중에는 진골로 편입된 사람이 있다.

1) 多十月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三國史記」8, 神文王 3년)

2) 又伐高麗 以其國王孫還國 置之眞骨位(「三國遺事」2, 紀異 2, 文虎王法敏)

위의 기록에 따르면 報德國의 왕을 삼았던 安勝은 서울로 불러 蘇判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를 眞骨로 편입하였다(2). 그러나 나머지 高句麗 주민들은 진골신분을 갖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高句麗·百濟의 주민들은 「三國史記」外位條에 나오는 관등 기록을 통해보면, 高句麗人은 6두품 정도까지 百濟人은 5頭品 정도까지로 편제한 것이 된다. 물론 百濟人으로 신라를 위해 功을 세운 자들은 6頭品이 차지할 수 있는 관등을 부여받은 예도 있기는 하나²⁵⁾, 高句麗·百濟人으로서는 安勝의 예를 제하고는 진골이 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의 진

24) 「三國史記」45, 職官 下, 百濟人位條 참조.

25) 「三國史記」5, 新羅本紀 5, 太宗武烈王 7년 11월 22일조 참조.

골신분에 편입된 다른 나라의 세력은 얼마 안되는 것이 분명하다.

II. 眞骨身分의 社會的 構成

앞에서 眞骨의 起源과 編成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眞骨身分을 가진 세력들의 가족관계, 거주지문제, 혼인, 집단의 규모 그리고 그 시대적 변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같은 작업은 자료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건 이러한 문제가 밝혀져야 眞骨의 실체가 명확해질 것으로 안다.

먼저, 眞骨의 家族關係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眞骨身分을 가진자들의 가족과 친족집단의 성격을 해명할 만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렇더라도 비록 몇 안되는 자료들이지만 이러한 자료를 비교·검토하면 眞骨의 家族과 親族에 비한 몇가지 문제는 밝혀낼 수 있지 않나 한다. 이를 위하여 聖骨集團의 구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다시 들어 보기로 한다. 聖骨集團은 왕을 포함하여 그 兄弟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聖骨集團중 왕과 그 형제의 다음 세대에 있는 자들은 왕위계승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집단은 성골집단으로 하나의 친족집단을 구성하였고 궁궐에 살았다. 그런데 실제 가족은 다시 나뉘어 왕과 그 형제들이 하나씩의 가족을 구성하였고 자기 궁궐내에 있는 별도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짐작이 간다.²⁶⁾ 이와 같은 성골집단의 존재는 진골집단의 가족과 친족집단에 대한 이해에 하나의 시사를 준다.

여기서 新羅 中代(29대 太宗武烈王—36대 惠恭王) 진골왕들의 가족과 친족집단에 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표[가]를 만들었다. 다음의 표를 보면 新羅中代에 왕위계승을 한 자들은 왕의 長子이거나 왕의 동생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중고시대 왕과 그 형제의 아우들 중에서 왕이 배출되던 것과는 틀리는 사실이다. 中代에는 왕의 형

26) 拙稿, “앞의 논문, 1983, pp. 50~52.

표[가] 中代の 王位繼承

②太宗武烈王 = 文明夫人

③文武王 = 慈儀王后

④神文王 = 金氏 = 神穆王后

⑤孝昭王 ⑥聖德王 = 成貞王后 = 昭德王后

⑦孝成王 = ⑧景德王 = 沙梁夫人 = 滿月夫人

⑨惠恭王 = 新寶王后 = (昌昌夫人)

() : 「三國遺事」에 의거한 것.

표[나] 下代 元聖王系の 王位繼承

⑩元聖王 = (淑貞夫人)

仁謙 = 聖穆太后

⑪昭聖王 = 桂花夫人 ⑫憲德王 = 貴勝夫人(a) ⑬興德王 = 章花夫人(b) ⑭忠恭 = 貴寶夫人(c) ⑮貴寶夫人(c)

⑯哀莊王 章花夫人(b)

義琮

⑰閔 = 允容 哀王 王后 人(a)

⑱貴勝夫 人(b)

⑲照明夫 人(c)

禮英 = 〇

均貞 = 貞嬪夫人

= 照明夫人(d) 憲貞 = 包道夫人

⑳神武王 = 貞繼夫人

㉑惠安王 = 〇 ㉒僖康王 = 文穆夫人(e)

㉓文聖王 = (昭明王后) 光和夫人(f) 寧花夫人(g) 啓明 = 光和夫人(f)

㉔景文王 = 寧花夫人(g)

㉕憲康王 = 義明王后 ㉖定康王 ㉗貞聖女王 = 魏弘

㉘孝恭王 義成王后

() : 「三國遺事」에 의거한 것임.

제의 아들로서 왕위계승을 한 예는 없다. 이것은 中代의 왕위장자계승과 관련시켜 새로운 형태의 왕위계승 친족집단이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이때 왕을 중심으로 한 왕의 핵가족이 형성되어 여기서 왕이 배출되었고 왕의 형제와 그 자식들은 왕위계승에서 기본적으로 배제되었다.²⁷⁾

그런데 新羅下代에 들어 서면 왕의 가족, 친족집단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라하대의 38대 元聖王에서 52대 孝恭王까지의 왕위계승표를 작성하여 보았다(표[나]). 위의 표[나]를 보면 우선 38대 元聖王 이후 왕위계승은 元聖王의 후손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 왕위계승관계를 통하여 왕위계승이 가능했던 신라하대 元聖王系 친족집단의 규모에 대하여 볼 수 있다. 39대 昭聖王에서 42대 興德王까지는 元聖王의 장자인 仁謙系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43대 僖康王은 禮英系의 인물이다. 그리고 44대 閔哀王은 다시 仁謙系였다. 이후 45대 神武王에서 부터는 모두 禮英系에서 왕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왕위계승은 평화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군사적 실력을 바탕으로 왕위를 차지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시 元聖王系의 후손들 중 일정한 집단에서만 왕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39대 昭聖王에서 45대 神武王까지의 왕들은 元聖王을 정점으로 하는 6촌의 범위안에 속하는 친족 사이에서 왕위를 계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후 45대 神武王 이후로는 禮英系에서만 왕을 배출하고 있다. 46대 文聖王과 48대 景文王의 사이는 禮英을 정점으로 하는 7촌 관계에 있다. 이로서 보면 신라하대의 왕위계승은 일정한 중심 인물을 두고 그 후손 중 6촌·7촌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왕위계승을 하던 친족집단의 범위는 4세대 정도의 깊이를 가진 가계의 생

27) 단지 세상을 떠난 왕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한하여 그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예들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왕위계승은 왕위를 비워둘 수 없는 비상시의 일일뿐 중대 왕위계승의 기본원리는 아니었다.

그의 從兄인 金昕은 閔哀王을 도와 大丘에서 淸海鎮의 병사를 막았으나 실패를 하였다. 이로서 보면 신라하대에는 정치적 이해 때문에 家系가 兄弟·從兄弟 사이에도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당시의 가족규모를 이야기해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에 비해 앞에서도 보았듯, 왕위계승은 元聖王의 후손 중 일정 친족집단 안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같은 친족집단의 성원들은 왕위에 오르려고 서로 투쟁하였으나, 그 외의 인물들을 왕으로 삼은 적은 없다. 따라서 당시에 비교적 좁지 않은 친족집단의 성원들은 비록 왕위계승권을 벌이더라도 정치적인 면에서 왕위를 그들 집단 안에 묶어 두는 하나의 단위가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왕위계승을 위해 싸우던 집안은 거의 부자간에 결속을 지속하는 핵가족화한 최소관계로 되었던 현상을 볼 수 있다.³⁰⁾ 그 결과 형제간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가계가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친족집단의 적자와 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1) ①太子法敏 角干仁問 角干文王 角干老且 角干智鏡 角干愷元等 皆文姬之所出也 當時買夢之徵 現於此矣 庶子曰皆知文級干 車得令公 馬得阿干 并女五人(『三國遺事』1, 紀異 1, 太宗春秋公)

②王一日召庶弟車得公曰 汝爲冢宰 均理百官 平章四海(『三國遺事』2, 紀異 2, 文虎王 法敏)

2) 妻智炤夫人 太宗大王第三女也 生子五人 長曰三光伊淩 次元述蘇判 次元貞海干 次長耳大阿淩 次元望大阿淩 女子四人 又庶子軍勝阿淩 失其母姓氏(『三國史記』43, 金庚信 下)

太宗武烈王은 文姬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모두가 太

30) 여기서 당시 왕족의 친족집단을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라하대 元聖王에서 53대 孝恭王까지는 8대의 가계가 된다. 그런데 그 안에서 왕위계승권을 공유하던 집단은 4대가계정도의 범위 안에서 유지되었다. 이때 그 기준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元聖王系의 후손 중에 여러 핵가족(최소가계)이 나뉘었고 그들 중에서 왕위계승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子, 角干으로 나오고 있다. 그에 비해 庶子는 3명으로 車得公의 관등은 알 수 없으나 다른 두명은 級干·阿干으로 되어 있다. 文武王이 車得公을 冢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³¹⁾ 그의 관등은 낮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車得公을 上大等이나 侍中에 임명한 기록이 없다. 여기서 車得公을 제하고 보면 적자와 서자 사이에는 정치적 차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金庾信의 적자와 서자 사이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金庾信은 太宗武烈王의 3女였던 智炤夫人과 사이에서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관등은 伊淦·蘇判·海干·大阿淦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등으로 보면 金庾信의 적자는 진골 대우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에 비해 그 母의 姓氏를 알 수 없는 서자 軍勝은 阿淦에 머물렀다. 여기서 단정은 할 수 없으나 車得公을 제하고 보면³²⁾ 太宗武烈王과 金庾信의 서자는 阿淦까지 밖에 못올랐다. 이는 어쩌면 서자들의 신분이 진골이 기보다 6頭品 정도로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나 궁금하다. 설령 그와 같은 서자들의 신분이 眞骨이더라도 적자들과는 격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다. 여하튼 세대가 지나면 적자제와 서자제의 정치·사회적인 격차가 커져 서자제통은 신분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지 않았나 한다.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신라시대에 적자와 서자의 신분은 그 母의 신분에 따라 달라진 것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고 부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자의 가계와 서자의 가계가 나뉘고 신분적인 격도 달라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서자들이 족장할 기회가 컸다고 여겨진다.

이제 진골신분을 가진자들의 혼인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진골의 혼인 전반에 걸친 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에 우선 성골왕과 혼인한 세력과 진골왕의 혼인의 성격을 주목하기로 한다.

먼저 신라중고시대 聖骨王과 혼인한 眞骨勢力에 대하여 볼 수 있다. 필

31) 「三國遺事」2, 紀異 2, 文虎王法敏條.

32) 실제로는 車得公의 관등도 알 수 없어 그 신분적 대우가 어떠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는 이에 대하여 이미 정리한 바 있어,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신라중고시대의 왕들 중 智證王·法興王·眞興王·眞智王은 모두 朴氏族 출신 여자를 왕비로 맞이 하였다. 이들 朴氏族 중 智證王과 眞興王의 妃는 모두 牟梁部 출신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牟梁部 출신 朴氏族은 당시 왕실에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³³⁾ 결국 중고시대에 왕비를 배출한 朴氏族은 정치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세력이 아니었던 朴氏族에서 왕비를 맞이 하였을까. 이것은 그 이전 麻立干時代(奈勿王-昭智王·智證王)의 왕들이 金氏族 중에서 왕비를 맞아 혼인동맹을 통하여 왕의 지위를 굳혀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일단 굳어진 왕의 지위를 간섭받지 않기 위하여 격이 떨어지는 朴氏族의 여자들을 왕비로 삼았다고 헤아려진다.

한편 新羅中代(太宗武烈王-惠恭王)의 金氏王들은 모두 金氏族의 여자와 혼인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金氏王들의 혼인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같은 金氏族이기는 하나 근친혼을 한 예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체로 金氏族 내에서 왕비를 찾아 金氏族의 도움을 구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⁴⁾ 그런데 당시의 왕들은 왕위 장자계승을 주로 행하였기에³⁵⁾ 왕의 지위가 전제화·초월화되어, 구태여 근친혼을 하여 왕의 근친집단의 결속을 다질 필요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다음, 두번째는 중대의 眞骨王 중에는 두번째 혼인을 하는 예들이 보이는 점이다. 중대의 왕 중 왕비를 두번째 얻은 왕은 32대 神文王, 33대 聖德王, 35대 景德王, 36대 惠恭王 등이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중대의 국왕들이 왕자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견해가 있다.³⁶⁾ 이를 통하여 왕위 부자상속제를 지속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 32대 孝昭王과 34대

33) 「三國遺事」I, 紀異 2, 智哲老王條 참조.

34) 李基白, 「韓國史講座」I (古代篇) 1982, p.311.

35) 李基白, 앞의 책, 1982, p.312.

36) 李基白, 앞의 책, 1982, 312.

孝成王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동생들에게 왕위를 넘겨 준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시의 일이고 당시에는 부자상속제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여기서 첫번째 부인이 쫓겨나는 이유에 대하여 볼 수 있다.

- 1) 神文王立…… 妃金氏 蘇判欽突之女 王爲太子時納之 久而無子 後坐父作亂 出宮 (『三國史記』 8, 神文王 즉위조)
- 2) 十五年 三月…… 出成貞^{一云 嚴貞}王后 賜彩五百匹 田二百結 租一萬石 宅一區 宅買康中公舊居賜之 (『三國史記』 8, 聖德王 15 年)
- 3) 王王莖長八寸 無子 廢之 封沙梁夫人 後妃滿月夫人 謚景垂太后 依忠角干之女也 (『三國遺事』 2, 紀異 2, 讚善婆郎歌)

위의 내용으로 보면, 神文王의 먼저 부인은 그의父가 반란에 연주되어 出宮되었다. 물론 그가 오랫동안 無子였다는 것도 이유는 되었겠으나 出宮된 직접적 이유는 그의父때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덕왕의 先妃는 어떤 이유로 出宮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成貞王后가 出宮되기 전해에 그의 아들인 重慶이 太子로 책봉되었고 그가 出宮된 이듬해에 太子 重慶이卒한 것으로 되어 있다.³⁷⁾ 그리고 成貞王后가 出宮될 때 여러가지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成貞王后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쫓겨났다고는 볼 수 없다. 無子로 인하여 出宮된 것은 景德王의 先妃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 밖에 惠恭王은 어떤 이유로 後妃를 맞이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中代의 왕 중에 後妃를 맞이하는 것은 景德王과 같이 모두 아들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神文王의 예와 같이 왕권의 전제화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안되는 왕비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³⁸⁾

신라 下代의 경우도 일반 眞骨貴族의 혼인에 대한 문제를 알아볼 자료는 거의 없다. 그에 비해 진골왕들의 혼인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앞의 표[나]를 보면 알 수 있듯 신라 下代 원성왕제의 왕들 중에는 가계내 혼인을 하는 예가 적지 않다. 신라 下代의 38대 元聖王

37) 『三國史記』 8, 新羅本紀 8, 聖德王 14 年 및 16 年조.

38) 이러한 문제는 신라중대의 왕위계승과 관련시켜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에서 52대 孝恭王까지는 분명히 元聖王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신라 中代와는 달리 元聖王系의 가계집단 안에서 왕위를 차지하여 부자간의 왕위계승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왕위 자체가 불안한 것이 되고 왕위계승전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성왕제의 세력들은 혼인을 통한 세력동맹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고 해야려 진다.³⁹⁾ 그 결과 元聖王系 집단 안에서의 가계내혼이 행하여지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麻立干時代에도 있었다.

지금까지 中古, 中代, 下代로 시대를 크게 나누어 진골왕들의 혼인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中古시대에는 聖骨王들이 대체로 朴氏族에서 왕비를 맞이하는 현상이 컸다. 그리고 中代에는 金氏族에서 왕비를 맞이하였는데 당시는 金氏族들의 세력이 강화되어 왕비도 그들 중에서 맞은 것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下代에는 元聖王系 왕족내에서 왕위를 둘러싸고 계승전을 벌이는 중 왕족내의 세력동맹이 필요하게 되어 元聖王系 가계내의 근친혼을 통한 세력연맹이 필요하게 되어 元聖王系 가계내의 근친혼을 통한 세력연맹을 맺어나가게 되었다고 해야려진다. 이로써 보면 성골왕, 진골왕의 혼인도 결국은 왕위의 안정 정도에 따라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中古시대 성골왕과 혼인한 박씨족 출신의 왕비는 그 신분이 진골 정도였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성골 남자와 진골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그 아버지가 속한 신분에 따라 신분이 정해졌다. 아버지가 성골로써 왕이거나 성골왕의 형제인 경우 자식은 성골신분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진골 남자와 성골 여자의 혼인에서 나온 자식은 그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진골이 되었다. 그리고 그후 신라 중대 하대에 걸쳐서 진골 남자와 주로 진골 여자들이 혼인을 했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은 진골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특히 신라 中古시대의 여자들은 신분

39) 그런데 43대 僖康王의 妃인 文穆王后는 44대 閔哀王의 누이가 된다. 그러면 서도 僖康王과 閔哀王 사이에 왕위계승전이 벌어졌던 것을 보면, 혼인에 의한 세력동맹도 동맹세력 사이의 왕위쟁탈을 방지하지는 못했다고 여겨진다. 즉 동맹세력 사이에도 왕위를 놓고는 다시 투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결정에 있어 중심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필요조건 정도의 역할 밖에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진골의 거주지와 그 규모에 대한 것이다. 신라 中古시대 法興王 7년 律令의 반포를 통하여 골품제가 편제되었고 그 안에 진골 신분이 만들어졌다고 보아 왔다. 이때 진골이 되었던 자들은 대체로 김씨족 중 奈勿王系 集團과 왕비를 배출하던 박씨족 중 일부집단에 한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후 金官加耶의 마지막 왕이었던 金仇亥가 진골귀족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이들의 거주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성골왕이 있던 때 진골신분을 가진자들은 왕궁 밖에 살 수 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⁴⁰⁾ 그러나 이들 진골집단은 왕궁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왕도 지역에 살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박씨족으로 왕비를 배출한 세력은 모량부에 산 것으로 나오고 있다.⁴¹⁾ 그들은 모량부에 살면서 현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총고분을 그곳에 남긴 주인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흥왕순수비에 나오는 인물들의 출신을 보면 喙部, 沙喙部가 주로 나오며 일부 本彼部도 있는데, 이와같은 出身部の 의미는 어떤 것인가 궁금하다. 新羅中古時代에는 아직 중국식의 姓·氏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일정한 집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所屬部를 기록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왜 眞興王巡狩碑에는 喙部, 沙喙部, 本彼部 출신만이 나오고 있을까. 그것은 당시 王京의 구조를 이해하면 정리할 수 있지 않나 한다. 중고시대의 왕경에는 王宮을 둘러싸고 王都가 발전했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왕도에는 진골을 비롯한 왕경인의 거주지, 각종 관청, 사찰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원래 이러한 왕도는 6부지역에서 발전한 것으로 왕도는 주로 喙部, 沙喙部 지역에 자리잡게 되었고 일부 本彼部 지역도 왕도에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⁴²⁾ 그 결과 진흥왕순수비등에 나오는 인물들

40) 聖骨集團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拙稿(앞의 논문, 1983, pp. 54~55)가 있다.

41) 拙著, 앞의 책, 1980, p. 208.

42) 拙著,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pp. 237~241.

은 그 거주지가 어디였는가에 따라 喙部, 沙喙部, 本彼部등으로 표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왕을 수행했던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왕도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생각된다. 단지 왕도지역은 종래 당사자의 집이 위치한 部로서 출신을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때 眞興王巡狩碑가 지방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6부 표시만으로도 그들이 왕경의 신분에 속한 것을 잘 나타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거기에 더하여 왕도가 위치한 3개의 부 출신만이 나오고 있어 部로 출신을 표시한 경우라고 왕도인을 뜻할 수 있고,⁴³⁾ 그들이 신라 사회 안에서 차지하는 사회정치적인 위치도 어느정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⁴⁴⁾ 신라 中代에 들어선 후 신라 왕경인들은 姓을 가지고 그 출신을 나타내게 되었다.

新羅中古時代 초의 眞骨 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신라 중고시대 말에 이르면 聖骨에서 방계화한 眞骨과 奈勿王系에서 늘어난 진골 등으로 인하여 그 집단의 규모가 늘어 났을 것이다. 이들 진골집단은 여러 개의 眞骨家系 또는 가문으로 구분이 되어, 각기 진골성원을 배출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지금, 당시의 진골가문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新羅中代에 들어가면 35 金入宅이란 존재가 나오고 있어, 眞骨의 거주지와 그 규모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시사를 주고 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35 金入宅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기로 한다.

新羅全盛之時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_{言富潤大宅也} 南宅 北宅 丐比所宅 本彼宅 梁宅 池上宅_{本彼部} 財買井宅_{廣信公祖宗} 北維宅 南維宅_{反香寺下坊} 歐宅 賓支宅_{反香寺北} 長沙宅 上樓宅 下樓宅 水望宅 泉宅 楊上宅_{梁漢岐}

43) 그렇다고하여 중앙정부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모두 왕도에서 살았을까 의심이 가기는 하나, 眞興王代의 대세는 그러하였다고 여겨진다.

44) 이와 관련시켜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華嚴經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歷史學報』 83, 1979, p.128)을 주목할 수 있다. 그 안에 보면 寫經에 관여한 인물들의 출신으로 大京(王京), 小京, 州, 郡, 縣 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거주지를 명시하는 데에는 사회·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宅法流寺南 鼻穴宅上同 板積宅上 芬皇寺坊 別教宅川北 衙南宅 金楊宗宅梁官寺南 曲水宅川北 柳也宅 寺
 下宅 沙梁宅 非上宅 里南宅 万所宅 思內曲宅 池宅 寺上宅大宿 林上宅 青龍之寺東方有池 橋南
 宅 巷叱宅本彼部 樓上宅 里上宅 榆南宅 井下宅⁴⁵⁾ (『三國遺事』1, 紀異 1, 辰韓條)

우선 위의 金入宅들이 존속한 연대는 언제였을까 궁금하다. 이와 외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볼 수 있다.

金氏宗財買夫人死 葬於青淵上谷 因名財買谷 每年春月 一宗士女會宴於其谷之南澗 于時百卉敷榮 松花滿洞府林 谷口架藥爲庵 因名松花房 傳爲顯利(『三國遺事』1, 紀異 1, 金庾信條)

위에 나오는 金氏宗 財買夫人은 그 이름이 財買井宅과 관련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金入宅 중의 하나였던 財買井宅은 金庾信의 祖宗으로부터 살아온 집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金入宅 중의 하나인 財買井宅이 생겨난 시기를 시사해준다. 그것은 대체로 金庾信의 조상으로서 신라 王京에 최초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던 金仇亥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金仇亥는 金官加耶의 마지막 왕으로 法興王 19년에 신라에 항복한 이래 王京에서 살았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財買井宅이란 집도 그 이후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특히 金庾信이 3국통일에 있어 제일의 공을 세운 후 財買井宅의 중요성은 커지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후 新羅下代까지도 財買井宅을 金庾信의 祖宗이 살던 金入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財買井宅과 金庾信의 家系 사이에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財買井宅을 金庾信의 祖宗이라 한 것으로 보아 그곳에는 그후에도 金庾信의 후손들이 살았다고 여겨진다. 이 경우 財買井宅에는 주로 金庾信의 후손 중 직계 성원들이 살지 않았나 한다. 이같은 金庾信의 宗家の 성원들의 복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거기서 방제화한 分家の 성원들은 財買井宅에서 살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자연 分家の 성원들은 財買井宅의 중심인물로부터 방제화할수록 그들의 신분을

45) 위의 사료에 나오는 金入宅의 수는 39개가 된다.

유지하기도 어려웠다고 해야려진다. 현재 財買井宅에 거주하면 사람들의 수를 비록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 미루어 다른 金入宅에도 각기 하나씩의 宗家が 있어 그 성원들이 거주하며 각 집단의 가제를 지속시켜 나갔다고 짐작이 간다.

한편 金入宅은 처음부터 모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시켜 李基東의 견해가 주목된다. 그는 金入宅이 대체로 中代부터 만들어졌으며 신라 말기에 이르면 京都에는 「三國遺事」에 기록된 金入宅들보다 실체는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들 金入宅의 주인들은 일반 진골 가문 가운데서도 극히 유력한 계층으로 보았다.⁴⁶⁾ 그런데 財買井宅의 예로 보면 新羅中古時代에 이미 金入宅에 해당하는 집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때부터 金入宅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한편, 金入宅의 주인들은 실제로 眞骨貴族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믿어진다.

新羅第二十五 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午 鑄皇龍寺鐘 長一丈三寸 厚九寸 入重四十九萬七千五百八十一斤 施主孝貞伊王三毛夫人 匠人里上宅下典(「三國遺事」3, 塔像 4, 皇龍寺鐘)

위의 기록에 따르면 皇龍寺의 종을 만든 匠人은 金入宅 중의 하나였던 里上宅의 下典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당시 金入宅의 실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宰相家不絕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唐書」東夷傳 新羅條)

라는 기록의 宰相家の 실력이 주목된다. 물론 金入宅과 宰相家를 같은 존재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金入宅들 중에는 여러가지 실력을 갖춘 것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金入宅만이 眞骨이 살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나 金入宅

46)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震檀學報」45, 1978; 앞의 책, 1980, pp. 186—187.

에 사는 진골들은 宗家를 이룬 세력으로 진골을 재생산하는 중심세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 金入宅에서 살 수 있던 사람들은 金氏族들이 가장 많았을 것이다. 그중에도 奈勿王의 후손들이 많았다고 헤아려진다. 한편 財買井宅의 예로 보아 加耶系의 新金氏 집안이 있었고, 신라하대말 세명의 朴氏王의 존재로 보아 朴氏族 집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新羅 中代·下代の 진골귀족들은 그 수가 늘어나 王都에만 거주할 수는 없게 되었다. 여기서 金入宅 중에 漢岐宅이 주목된다. 필자는 신라의 王都가 일찌기 梁部·沙梁部와 本彼部の 일부 지역에 걸쳐 발전했다고 하였다.⁴⁷⁾ 이 경우 漢岐부에 위치했다고 믿어지는 漢岐宅은 王都에는 위치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여기서 위에 나오는 金入宅 중에는 王都에 위치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中代 이후 늘어난 진골집안의 거주지가 王京 중 王都를 벗어나 王畿地域까지 확대된 것을 뜻한다. 그렇더라도 王과 가까운 진골귀족은 王宮 근처에서 살았을 것이다.⁴⁸⁾

新羅下代에 이르게 되면 眞骨家와 眞骨의 성원수는 더욱 늘어 났다고 여겨진다. 비록 下代の 기록은 아니나 이같은 眞骨의 증가를 이야기해 주는 기록이 있다.

- 1) 七月 三日 大恭角干賊起 王都及五道州 郡并九十六角干相戰大亂 大恭角干家亡 輸其家資寶帛于王宮 新城長倉火燒 逆黨之寶穀在沙梁·牟梁等里中者 亦輸入王宮 亂彌三朔乃息 被賞者頗多 誅死者無算也 表訓之言 國殆是也(「三國遺事」2, 紀異 2, 惠恭王條)
- 2) 四年……秋七月 一吉濱大恭與弟阿濱大廉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三國史記」9, 惠恭王 4년)

위의 기록에 나오는 大恭의 亂은 惠恭王 4년(768) 7월에 일어났다. 大恭의 난이 일어나자 전국의 96角干이 서로 싸운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

47) 拙著, 앞의 책, 1982, pp. 237—231.

48) 그러한 예로 皇龍寺와 皇聖寺 사이에 살았던 車得公을 볼 수 있다(「三國遺事」2, 紀異 2, 文虎王法敏條).

에 「三國遺事」와는 달리 「三國史記」에는 大恭이 角干이 아니고 一吉湊으로 나와 있어 96 角干的 亂이란 기록을 믿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당시 內亂은 주로 진골귀족들이 일으켰고, 진골귀족의 수가 그만큼 늘어난 것만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시켜 신라하대에 진골귀족의 수가 크게 늘어 났다고 하는 李基東의 견해를 주목할 수 있다. 즉 李基東은 新羅下代 王統이 확립되며 진골의 족적인 기반확대와 더불어 그 양적 증가·확산의 경향이 더욱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왕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세대수에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진골귀족신분을 유지할 수 있던 骨品制의 원리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진골귀족들은 서로간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함으로써만 몰락할 뿐 달리 이들을 도태시킬 원리나 방법이 없었다고 하였다.⁴⁹⁾

그러나 필자는 新羅下代에 진골의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李基東이 말하는 것처럼 왕의 자손이면 누구나 세대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진골신분을 유지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일찍부터 방계귀족을 도태시키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골의 경우 왕의 즉위와 함께 새로운 성골집단이 구성되는데 前王 밑에서 성골이던 사람도 새로운 성골집단의 범위를 벗어나면 진골신분으로 된 것을 보아 그것을 알 수 있다.⁵⁰⁾ 이러한 신분강화의 현상은 보편적이어서 진골에도 해당하였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 경우 金入宅은 성골가계에서와 같이 진골신분 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나의 金入宅

49)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앞의 책, 1980, pp. 178-179 참조. 그는 위의 논문 註 14에서 Dahomey의 왕족이 전 국민의 10% 정도를 구성했다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는 신라인의 10%가 진골이 되었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진골의 비율이 컸으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50) 拙稿, “新羅 中古時代의 聖骨”, 「麗壇學報」 50, 1980, pp. 13~15 참조. 위의 논문을 작성할 때 필자는 성골집단을 지나치게 3대가계집단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거주형태로는 兄弟共同家族이었다고 하였다(p. 16). 성골집단은 왕의 형제공동가족 정도였다고 보고있다. 3대가계집단은 성골집단의 운영과 왕의 배치를 이해하는 하나의 가설적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여 두고자 한다.

에는 진골귀족을 구성한 여러 세력집단 중 하나의 宗家가 있었고, 각 宗家の 주인공(宗孫)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宗家の 진골집단이 편제 되었을 것이다. 이때 일정 진골집단만이 그 신분을 유지하였고 방제화한 세력은 族降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⁵¹⁾

한편 新羅下代에는 왕위계승전이 벌어지는 과정에 일부 진골귀족들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분변동이 일어나는 수도 있었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보기로 한다.

從父兄昕 字泰……開成已未閏正月 爲大將軍 領軍十萬 禦清海兵於大丘 敗績自以敗軍又不能死緩 不復仕宦 入小白山 葛衣蔬食 與浮圖遊 無嗣子 夫人主喪事 後爲比丘尼(『三國史記』 44, 金陽傳)

金陽의 從兄인 金昕은 閔哀王을 도와 清海兵과 大丘에서 맞섰으나 패배하고 小白山으로 들어가 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그 밖에도 많았을 것이다.⁵²⁾ 이때 이들 지방으로 내려간 진골로서 다시 중앙정계에 복귀하지 못한 세력들은 당대에는 진골신분으로서의 의식을 가졌을지 모르나 그 후손들까지 과연 진골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유는 신라의 골품신분 중 진골은 왕경인에게 주었던 신분이고⁵³⁾, 또 왕경에 살아야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그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진골의 많은 가족·가계 중에는 대가 끊기는 현상도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진골신분 전체의 가계와 그 성원수의 폭은 좁지 않았기에 성골과 같이 진골신분 자체가 소멸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일정한 가계가 소멸되는 현상이 있었고, 이것은 진골신분자의 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는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여하

51) 필자는 範淸도 그러한 이유로 族降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1919, p. 74.

52) 그 중에는 金周元 같은 사람이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44, 江陵大都護府人物 金周元條).

53) 準王京이라고 하는 小京의 주민들도 진골신분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튼 신라하대에 진골의 수가 늘어나긴 하였으나 그것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야려진다.

반면 신라하대의 진골 중에는 물론이지만 진골이 아닌 자들 중에도 金氏族 출신임을 주장하는 집단이 늘어났다고 생각되어 주목된다. 그러한 예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 1) △△△運 俗姓金氏 鷄林人也 其先降自聖韓與於郞勿 本校百世 貽厥嘉猷 大父瑯琊累官 至本國執事侍郎 父確宗歷任 本國司兵員外 俱揚祖德 克紹家聲……(毗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p. 135~136)
- 2) 大師法諱麗嚴 俗姓金氏 其先雞林人也 遠祖出於華胄 舊衍王城 其後隨宦西征 徙居藍浦 父△義 追攀祖德 五柳遙名……(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131)

위의 사료에 나오는 眞空大師의 조상은 聖韓(星漢·味鄒王)·郞勿(奈勿)에 이어지는데 그의 大父는 執事侍郎이 되었다. 이로써 보면 그들 집안은 郞慧和尚의 경우와 같이 族降이 된 것은 아니었나 한다.⁵⁴⁾ 그리고 같은 왕경인 麗嚴은 그의 遠祖가 王城에서 번성했던 귀족으로 그 후 언제인가 藍浦에 옮겨가 산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로써 보면 일찍부터 王京인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같이 지방으로 이주한 집단은 王京에서 누렸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았을가 생각된다. 여하튼 신라하대에 이르게 되면 진골이 아니면서 그 출신이 味鄒王 또는 奈勿王등에서 비롯한 것을 강조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Ⅲ. 眞骨身分의 維持

新羅의 骨品制가 엄격하게 짜여진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骨品制의 한 신분이었던 眞骨도 엄격하게 유지되어 나갔다고 믿어진다. 여기서는 진

54)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신분을 밝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관련시켜 李基白, “新羅 下代の 執事省”(앞의 책, 1974, pp. 186~189)이 크게 주목된다.

골신분의 유지에 대한 문제를 알아 보기로 한다. 그런데 진골신분의 유지에 대한 문제를 보면 그 자체가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면들이 있다. 진골신분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진골신분의 획득, 변동, 유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차례로 정리하기로 한다.

신라시대에는, 진골 뿐 아니라 모든 신분에 해당되겠지만, 신분의 획득은 기본적으로 출생에 의해 결정되었다. 진골신분의 경우 부모 양쪽이 모두 진골이면 그 자식들도 진골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신분이 틀릴 경우, 성골남자와 진골여자의 혼인에서는 성골이 나오고, 진골남자와 성골여자의 사이에서는 진골이 나왔다.

다음 元曉의 예로 보아, 진골여자와 6두품 남자 사이에서는 薛聰과 같은 6두품이 나왔다. 여기서 진골 출생의 기준은 아무래도 진골남자인 父에 달렸던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진골남자의 자식이라든가 庶子들일 때는 그들의 母를 기준으로하여 신분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았나 한다. 이러한 현상은 庶母의 신분이 낮았을 때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 인물이 그의 생시에 진골신분을 획득하는 예도 있었다. 그 하나는 加耶의 마지막 왕이었던 金仇亥와 그 가족과 高句麗의 安勝 집안들 수 있다. 이는 피정복국의 지배자 중 극히 일부를 신라의 진골신분으로 편입한 것을 뜻한다. 그 밖에 성골신분을 가졌던 인물이 진골신분으로 떨어지는 예도 있다. 眞智王의 생시에 그의 아들이었던 龍春은 분명히 聖骨身分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왕위가 眞平王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眞平王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골집단이 생겨나고 龍春은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진골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族降의 한 예가 된다.

한편 신라시대에는 진골신분을 가진자들이 族降하여 6頭品으로 되는 예도 있었다. 이를 말해 주는 다음 기록을 볼 수 있다.

55) 金哲坡,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1968, p.164.

法號無染 於圓覺祖師爲十世孫 俗姓金氏 以武烈大王爲八代祖 大父周川 品眞骨 位韓榮 高曾出入皆將相戶知之 父範清族降眞骨一等 曰得難(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74)

위의 사료에 나오는 太宗武烈王은 範清의 7代祖가 된다. 範清이 진골에서 一等族降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견해가 있다. 그중 金哲俊은 範清이 太宗武烈王의 7代同一親族集團의 말단에 속하였기에 族降이 되었다고 하였다.⁵⁵⁾ 이와 같은 金哲俊의 견해에 대한 비판이 있다.⁵⁶⁾ 李基東은 範清이 憲德王 14년(822) 金憲昌의 난에 連坐되어 6頭品으로 강등되었다고 보는 견해⁵⁷⁾ 타당하다고 하였다.⁵⁸⁾ 이와 같은 李基東의 견해는 왕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세대수에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진골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직 권력투쟁에 패배함으로써만 몰락할 뿐, 달리 이들을 도태시킬 원리나 방법이 없었다는 그 자신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⁵⁹⁾

필자는 위의 두가지 주장이유 중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로 聖骨集團의 성원들도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골집단을 구성하게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세력은 族降하여 진골신분을 가지게된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金哲俊이 일정 친족집단의 범위를 벗어나면 族降을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볼 수 있다. 단지 그의 주장처럼 신라시대 사람들이 7代同一親族集團을 유지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⁶⁰⁾

聖骨의 친족집단 폭은 眞骨보다 훨씬 적었다. 이 경우 진골 친족집단폭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정키는 어렵다. 오히려 진골을 구성한 여러 가문들 중 그들이 차지하는 정치적 지위에 따라 그 세력을 유지할 힘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자연 진골가문 중 세력이 있는 집단에서는 더 큰 친족집

56) 李基東, “新羅骨品制 研究의 現況과 그 課題”, 「歷史學報」 74, 1977; 앞의 책 1980, p. 31.

57) 金杜珍, “朗慧와 그의 禪思想”, 「歷史學報」 57, 1973, pp. 26~27.

58) 李基東, 앞의 책, 1980, p. 32.

59) 李基東, 앞의 책, 1980, pp. 178~179.

60) 拙著, 앞의 책, 1980, p. 113 참조.

단을 진골신분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진골집안에서는 진골 신분을 유지하는 친족집단의 규모도 적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진골들의 가문이라 보여지는 金入宅에도 집단의 우열이 갈려져 있었다고 해야려진다. 특히 진골의 여러 가문 중에서 왕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집단은 그 세력이 컸고 진골집단의 규모도 작지 않았을 것이다.

진골의 여러 가문 중에는 그 가문을 유지하는 중심계보의 宗家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세력중에는 中古時代 말까지는 葛文王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중심계보는 주로 장자에 의해 이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이때 방제화의 정도가 큰 성원들은 族降이 되었을 것이다. 武烈王은 範淸의 7代祖인데, 範淸이 族降된 외에는 이와 유사한 예가 없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 족장이 되는지 잘 알 수 없다.⁶¹⁾ 이때 範淸이 族降된 기준은 太宗武烈王에서 몇대가 지나서가 아니라 範淸 생시 太宗武烈王의 후손으로 신분유지의 기준이 되는 宗孫에서부터 일정 범위 밖으로 방제화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여 가계시조와의 수직적인 기준이 아니고 살아 있는 宗家·宗族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나 하는 수평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해야려진다. 단지 높은 관동·관직을 가진자는 그 생시에 族降의 기회가 있더라도 그 신분을 유지하도록 보장된 것은 아니었나 한다.

한편, 金入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진골의 친족집단 성원들은 모두 金入宅에 거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金入宅의 중심적 가족이 새로 생길때에 방제화하는 가족들은 점차 金入宅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도가 반복될수록 진골의 거주지역은 왕도, 왕경 6부 다시 지방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방제화의 정도가 큰 진골세력은 그 거주지도 정치중심구역에서 멀어지게 되

61) 朗慧和尚에게 武烈王은 8代祖가 되니 朗慧의 父인 範淸에게 武烈王은 7代祖가 된다(“聖住寺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1919, p. 74). 따라서 武烈王과 範淸의 사이는 8世代가 되는 셈이다. 여기서 金哲俊의 견해(註 55)는 성립할 수 없음도 알 수 있다.

있고 정치적 진출도 어렵게 되어 族降의 기회가 커지게 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방계의 진골귀족을 族降시키는 현상은 진골 족강의 기본적인 원리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우에 따라 李基東의 주장과 같이 정치적 도태에 의해 신분이 낮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반란을 진압하고 그 주모자를 처벌하는 과정에 족강이 되는 자들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반란에 대한 처벌의 예를 보면, 모든 반란자들이 족강만 된 것은 아니었다.

- 1) ①元年 八月 八日 蘇判金欽突·波珍浚興元·大阿浚眞功等 謀叛伏誅(「三國史記」 8, 神文王 元年)
- ② 二八日 誅伊浚軍官 教書曰……以懲後進軍官及嫡子一人 可令自盡 布告遠近 使共知之(「三國史記」 8, 神文王 元年)
- 2) ① i) 七年 二月……中侍幢元退老 太阿浚順元爲中侍(「三國史記」 8, 孝昭王 7 年)
- ii) 九年 夏五月 伊浚慶永^{永一作玄}謀叛 伏誅 中侍順元緣坐 罷免(「三國史記」 8, 孝昭王 9 年)
- ② i) 十九年 伊浚順元之女爲王妃(「三國史記」 8, 聖德王 19 年)
- ii) 三年三月 納伊浚順元女惠明爲妃(「三國史記」 9, 孝成王 3 年)

위의 기록을 보면, 반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伏誅되고 있다. 그리고 金欽突의 난 때 上大等 軍官과 그의 嫡子は 自盡되었다. 그런가 하면 伊浚慶永의 난에 연좌된 中侍 順元은 파면되었다(사료 2 ① ii). 그후 그는 聖德王과 孝成王에게 두 딸을 각기 왕비로 들이고 있다(2 ②). 이로서 보면 반란에 대한 처벌도 상황에 따라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반란에 의해 진골을 처벌하는 것은 진골도태의 지속적인 방법도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었다.

다음은 진골신분 자체의 유지에 대한 문제를 보기로 한다. 성골집단은 그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에, 언제인가 대가 끊길 위험이 있었다. 그것이 사실로 되어 眞平王을 마지막으로 성골의 남자는 대가 끊기게 되었고 眞德王을 마지막으로 진골의 여자까지 사라지게 되어 그 신분이 없어졌다. 그에 비해 진골신분의 기층은 한층 두터웠다. 진골신분 안에는 金入

宅과 같은 진골을 배출하는 수십개의 가문이 있었다. 그리고 각 가문에 속한 진골세력을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었다. 따라서 각 가문(가계)에서 중심이 되는 宗家集團은 金入宅에 살았으나 그들 가족에서 방제화한 가족들은 金入宅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방제화한 진골가족 중에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 집안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방제화된 집안에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력기반이 줄어들었고 세대를 거치며 방제화의 정도가 더할수록 진골신분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진골신분을 가진자들의 수는 중고시대에서 중대·하대에 이르며 완만한 증가를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제화한 진골로서 정치적 진출을 하여 그 세력을 강화시킨 집단들이 늘어나면서 촉진되었을 것이다. 물론 일부 진골의 가문 또는 그 안의 가족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제거될 수도 있었고 또는 단순히 후손을 재생산하지 못하여 대가 끊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골신분을 가진 집단의 폭은 넓어 그러한 도태와 단절이 있더라도 그 규모가 늘어났다. 따라서 진골신분은 성골과 같은 운명에 놓일 수가 없었다.

Ⅳ. 眞骨의 活動

지금까지 眞骨身分의 기원과 그 실체 그리고 신분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런데 眞骨이 어떠한 존재였나를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품제하에서 진골들의 활동이 어떠한지 불필요가 있다. 新羅中古時代의 眞骨貴族은 聖骨 다음가는 신분층으로 왕위를 계승한 다른 관직들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中代·下代의 진골은 왕위까지 차지하였다. 따라서 眞骨의 활동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진골의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그중 신라 중고시대 진골의 정치적 활동이 어떠한지. 중고시대의 왕은 성골에서 나

왔다. 그에 비하여 眞興王 巡狩碑에 나오는 기록을 통하여 和白會議의 구성원이었던 大等은 眞骨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가 있다.⁶²⁾ 그런데 蔚州 川前里書石에는 “眞興大等”이란 명문이 있다.⁶³⁾ 이것이 王位에 오르기 전의 眞興이었다면, 大等の 자리는 진골뿐 아니라 성골에서도 차지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당시 성골의 성원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여겨지기에 大等集團의 대부분은 진골출신 자들이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法興王 4년 兵部の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그 이후 많은 官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각 행정관청에는 장관인 兵部令등의 습 자리가 설치되었다. 이같은 습이 될 수 있는 자의 관등은 大阿湊이상으로 되어 있었다.⁶⁴⁾ 따라서 각 행정관청의 장관인 습은 진골들이 차지하는 자리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습에 해당하는 자들이 大等職을 겸하였다고 생각되는 점이다.⁶⁵⁾ 이러한 생각이 가능하다면 진골귀족들은 각 행정관청의 장관인 습뿐 아니라 和白會議의 구성원인 大等の 職을 겸함으로 신라의 최고 power elite 세력이 되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은 中代와 下代에 있어 진골들의 정치적 활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보기로 한다. 신라중대를 연 29대 太宗武烈王은 진골신분을 가졌다. 이후 56대 敬順王까지는 모두 진골출신이 왕으로 되었다. 여기서 이같은 진골 왕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中代の 진골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中代の 왕들은 모두 太宗武烈王의 직계에서 나왔다. 그것도 왕을 중심으로 왕의 長子가 주로 왕이 됐으나, 32대 孝昭王과 34대 孝成王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그들의 동생들이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中代에 왕위계승권을 가진자는 한명으로 되어 있어 다른 어느 시대보다 왕위계승

62) 李基白, “大等考”, 『歷史學報』 17, 18 合, 1962; 19 앞의 책, 74, p. 86의 補註

63)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1976, p. 29.

64) 『三國史記』 38, 雜志 7, 職官 上.

65) 拙著, 앞의 책, 1982, p. 218. 그런데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大等이 어느 관부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李基白, 앞의 책, 1974, p. 87).

이 안정되어 있었다. 또 이때 왕위계승을 못하게 된 왕자들 및 왕의 동생들은 각기 왕궁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였고 왕 밑의 주요 사회·정치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中代の 眞骨王들은 中古時代의 聖骨王과 같이 종교적인 힘으로 그들의 지위를 굳힐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때에는 보다 행정적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그와 같은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왕의 지위를 굳히고 정치적 권력을 강화시켜 왕권의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中代の 왕위계승을 보면, 왕위계승권자가 한명으로 굳어졌고 또 그와 같은 왕위계승권자를 배출하던 왕의 가족도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의 자식에 국한되어 있는 핵가족적인 것이었다. 이같이 왕의 가족 폭이 축소된 것은 결국 왕위계승권자의 배출이 풀길 가능성을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내포한 것이 된다. 그 결과 中代の 왕들은 왕자를 얻기 위하여 왕비를 바꾸는 일이 있었다.⁶⁵⁾

그러면서도 당시의 왕은 정치를 행할 능력이 있어야만 하였다. 景德王이 아들을 얻기 위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서 보면 惠恭王은 그 출생부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⁶⁷⁾ 실제 惠恭王은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太后가 섭정을 하였다.⁶⁸⁾ 그런데 惠恭王은

十六年 二月 雨土 王幼少即位 及壯淫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杌隳 伊淪志貞叛 聚衆圍犯宮闕 夏四月 上大等金良相與 伊淪敬信驍兵 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 良相等 謚王爲惠恭王(『三國史記』, 9, 惠恭王 16年)

이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 정치를 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中古時代를 전제왕권이 강화된 시대로 보고 있으나 당시의 왕도 왕위에 올라 옳게 정치를 행하여야 한다는 정당성을 결할 때는 왕위에서도 쫓겨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中古時代에 왕권이 전제화

65)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古代篇), 1982, p. 312.

67) 李基白, “景德王과 斷俗寺 怨歌”, 『韓國思想』 5, 1962; 앞의 책, 1974, p. 217.

68) 『三國史記』 9, 新羅本紀 9, 惠恭王 즉위조.

되었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中代에는 골품제의 구실점이었던 왕의 지위가 가장 안정되었고 왕권이 강화되어 있었기에 골품질서가 가장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다음, 37대 宣德王에서 시작되는 下代の 眞骨王과 관련된 문제를 보기로 한다. 下代の 38대 元聖王 이후 52대 孝恭王까지는 모두 元聖王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왕위계승전이 여러 차례 벌어진 바 있다. 신라하대에 왕위계승전을 처음 벌인 사람은 40대 哀莊王의 숙부인 彥昇이었다. 그는 조카인 哀莊王을害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그가 憲德王이다.⁶⁹⁾ 두번째의 왕위계승전은 興德王이 薨했을 때 그의 堂弟인 均貞과 또 다른 堂弟인 憲貞의 아들 梯隆(43대 僖康王) 사이에 벌어져 梯陸이 승리를 한 것이다.⁷⁰⁾ 세번째는 僖康王이 재위한지 1년 조금 지나 仁謙의 孫子이며 忠恭의 子이고 僖康王의 6촌이 되는 金明 등이 왕위계승권을 벌여 僖康王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金明(44대 閔哀王)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⁷¹⁾ 네번째는 祐徵(45대 神武王)이 淸海鎮大使 弓福(張保臯)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오른지 1년 정도 밖에 안되는 閔哀王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사건이다.⁷²⁾ 神武王은 그의 아들인 慶膺(46대 文聖王)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 있었으나, 이때는 역시 淸海鎮大使 弓福의 군사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다음 文聖王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던 弓福이 그의 딸을 왕비로 들이려다 중앙귀족의 반발을 받아 제거된 후 文聖王은 그 세력기반을 잃었다. 거기에 더하여 王太子가 卒하였기에 顯命을 내려 誼靖(47대 憲安王)을 왕으로 삼도록 하였다.⁷³⁾ 憲安王은 재위 5년 春正月에 병이 걸려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그의 사위인 膺廉에게 왕위를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에 憲安王이 薨한 후 膺廉이 왕이 되니 그가 48대 景文王이

69)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哀莊王 10년 및 憲德王 즉위조.

70)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僖康王 즉위조.

71)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僖康王 3년 및 閔哀王 즉위조.

72)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閔哀王 즉위조, 2년조 및 神武王 즉위조.

73)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文聖王 19년 및 憲安王 즉위조.

었다.⁷⁴⁾

이후 왕위는 52대 孝恭王까지 별 문제 없이 이어졌다. 그러던 것이 53대 神德王에 이르러 왕족세력이 朴氏族으로 되었다.⁷⁵⁾ 54대 景明王은 神德王의 太子였고 55대 景哀王은 景明王의 同母弟로서 왕위에 올랐다. 甄萱은 景哀王을 살해하고 文聖王의 裔孫인 敬順王을 왕으로 삼았다.⁷⁶⁾

지금까지 보아온 신라하대 왕위계승에 있어 크게 두가지 문제가 주목된다. 하나는 元聖王系 후손들 사이에서 벌어진 왕위계승전의 성격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라하대 말에 나타나는 세명의 朴氏族 출신 왕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그중 먼저 元聖王의 후손들 사이에 벌어졌던 왕위계승전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미 필자는 앞에서 元聖王系 家系內的 혼인에 대한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元聖王系 가계내에서의 왕위계승전에 대하여도 간단히 보았다. 당시 왕위계승전은 일정한 친족집단내에서 벌어진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하나의 친족집단의 성원은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공유한다.⁷⁷⁾ 이때 元聖王系 후손들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왕위계승권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비록 군사적 힘에 의해 왕위계승전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 집단안에서만 왕위계승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下代の 왕위계승전을 단순히 仁謙系와 禮英系의 투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⁷⁸⁾ 우선 憲德王의 즉위는 숙질간의 투쟁에서 숙부가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均貞과 僖康王 사이에서도 숙질간의 왕위계승전이 벌어졌다. 한편 僖康王을 제거하고 閔哀王이 즉위한 것과 閔哀王을 제거하고 神武王이 즉위한 것은 再從弟間的 왕위계승전을 뜻한다. 이로써 보면 仁謙系와 禮英系에서 숙질간의 왕위계승전이 한번씩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仁

74)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憲安王 5년 및 景文王 즉위조.

75)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神德王 즉위조.

76)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敬順王 즉위조.

77) Ernest L. Schusky, 「Mahual for Kinship Analysis」, 1972, p. 25.

78) 吳星 “新羅元聖王系의 王位交替”,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9, pp. 611~623.

謙과 禮英을 가계시조로 하는 2대, 3대 사이에서의 투쟁이 된다. 이와 유사한 왕위계승으로는 비록 평화적으로 교체되기는 했으나 文聖王에서 憲安王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禮英系에서 仁謙系로 다시 仁謙系에서 禮英系로 왕위가 넘어간 것은 元聖王을 가계시조로 하는 4대가계내에서의 왕위계승이 된다. 여기서 가계시조를 포함해 3대가계내 또는 4대 가계내의 왕위계승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 이때 仁謙系는 閔哀王을 마지막으로 왕위계승권을 상실하고 대신 禮英系에서 왕위계승권을 장악하여 다시 禮英을 가계시조로 하는 집단내에서 왕위를 계승하여 나가게 되었다.⁷⁹⁾

47대 憲安王은 아들이 없이 세상을 뜨며 사위인 膺廉(景文王)을 왕으로 삼았다.⁸⁰⁾ 이는 왕위계승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景文王이 禮英系 후손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켰기에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憲安王의 사위였다는 점은 왕이 된 필요조건이었다. 그러한 사정은「三國史記」憲安王 5년조에 잘 나타나 있다. 이후로 景文王의 후손들 사이에서 평화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었다. 한편 56대 敬順王의 즉위는 일종의 비상시에 벌어진 일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신라하대 중 元聖王系가 왕위를 계승하던 시대의 왕위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던 집단은 45대 神武王의 즉위까지는 元聖王을 시조로 하는 4대가계의 성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神武王의 즉위 이후에는 가계시조가 한단계 내려와 禮英系로 되고 있다. 이들 4대가계내에는 다시 3대가계의 소집단이 나뉘기도 한다. 여하튼 이들 3대 또는 4대 가계집단은 왕위계승권을 주장하는 집단이며 그러한 자격을 바탕으로 실력에 의해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였다.

다음, 신라하대 朴氏王들의 즉위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 문

79) 元聖王의 후손들로서 왕위계승권을 가진 집단은 세대를 지나며 커지나, 仁謙系가 왕위계승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무한정 늘어나기 만한 것은 아니었다.

80) 「三國史記」11, 新羅本紀 11, 憲安王 5년조.

제는 후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여기서는 53대 神德王이 즉위한 이유를 잠시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三國史記」의 기록단을 보면 첫째 그의 부인이 49대 憲康王의 딸이라는 점과, 둘째 孝恭王에게 아들이 없었던 점, 그리고 세째 國人들이 추대하여 왕이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⁸¹⁾ 孝恭王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물론 神德王이 즉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朴氏族인 神德王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부인이 憲康王의 딸이었던 점을 다시 주목할 수 있다. 실제 景文王은 憲安王의 사위로서 왕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憲康王 이후 定康王·眞聖王·孝恭王 등 세명의 왕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憲康王의 사위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父系制社會인 신라에서는 眞聖王은 여왕이었기에 그에게 아들이 있더라도 그가 왕위계승권을 가질 수는 없었다.⁸²⁾ 그리고 定康王과 孝恭王은 아들이 없었다. 따라서 景文王系の 金氏王들은 孝恭王을 마지막으로 代가 끊기게 되었다. 자연 그들 집단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이었던 憲康王의 딸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남편이 되는 景暉(神德王)을 왕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景暉가 金氏族이 아니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궁금하다. 여기서 그를 국민들이 추대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神德王이 金氏族이 아니었기에 國人들이 추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당시 元聖王系 金氏族들은 수차례에 걸친 왕위계승전을 거치며 상대세력을 계속 제거하여 나갔기에 신라말에 이르게 되면 그 세력집단이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에 비해 신라국초의 왕족이었던 朴氏族 중에는 신라하대까지 지배세력으로 남아 진골신분을 가진 집단이 있었고 이들 집단의 실력은 분열된 金氏族 못지 않은 것이었기에 그들 중에서 왕을 배출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신라하대 神德王이 즉위할 때는 이미 弓裔나 甄萱이 활약하던 시대로⁸³⁾ 중

81)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神德王 즉위조.

82) 拙著, 앞의 책, 1980, p.150.

83)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神德王 3년(弓裔) 및 5년(甄萱)조 참조. 물론

앙귀족의 실력은 크게 줄어들어 있었다. 실제 神德王은 왕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 세력은 크지 못하였다. 결국 神德王을 비롯한 3명의 朴氏王은 무너져가는 신라의 왕위를 이어 신라의 일부지역을 통치한 셈이 된다.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왕위도 계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 왕이 아니었던 진골귀족들의 정치적 활동이 어떠한 것이었나 해아려 보기로 한다. 진골귀족들이 차지하던 官等·官職 그리고 속하였던 官府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여기서는 우선 진골귀족들이 올랐던 관등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儒理王九年 置十七等 一曰伊伐濩或云伊霸干或云于伐濩或云角干或云角榮或云舒發濩或云舒弗郎… 五曰大阿濩 從此至伊伐海唯眞骨受之(「三國史記」38, 職官 上)

위의 사료를 토대로 신라 17 관등 중 5등급인 大阿濩 이상은 진골만이 오를 수 있던 관등임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진골귀족이 차지하였던 최초의 관등의 하한은 제 9등급인 級濩이었다는 견해도 있다.⁸⁴⁾

한편 진골이 차지하였던 관직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진골이 오를 수 있던 관직의 상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한에 대한 것이다. 진골이 차지하던 관직의 상한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진골은 和白會議의 장인 上大等을 비롯하여 大等이 될 수 있었고, 각 행정관청의 장관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진골은 將軍과 같은 무관직과 都督 등의 外官職도 차지하였다.

진골이 차지하던 관직의 상한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하던 관직의 하한은 어떠하였을까 궁금하여진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까닭은 다음 사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 斯多舍 系出眞骨 奈密王七世孫也……時人請奉爲花郎 不得已爲之 其徒無慮千人 盡得其歡心 眞興王命伊濩與斯夫襲加羅一作國時 斯多舍十五六 請從軍 王以

弓爾나 甄薑은 그 이전부터 활약하였다.

84) 申澧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1984, pp.213~214. 그러나 신라하대에 가면 진골귀족이 舍知의 관등을 가진 예가 있어, 申澧植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본고에서 곧 다룰 예정이다.

幼少不許 其請勳而志確 遂命爲貴幢裨將 其徒從之者亦衆……(「三國史記」44, 斯多含條)

- (2) 官昌^{一云官狀} 新羅將軍品日之子 儀表都雅 少而爲花郎 善與人交 年十六 能騎馬彎弓 大監某鷹之太宗大王 至唐顯慶五年庚申 王出師 與唐將軍侵百濟 以官昌爲副將 ……大王階位級洙 以禮葬之 購其家唐絹 三十四 二十升布 三十四 穀一百石(「三國史記」47, 官昌條)

위의 기록에 나오는 斯多含(사료 1)은 나이 15.6세에 貴幢裨將이 되었고 官昌(사료 2)은 花郎의 자리에 있으면서 660년에 副將이 되었다. 당시 官昌이 몇살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가 말달리고 활쏘는 데 능하여 花郎이면서 추천을 받아 百濟와의 전투에 참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三國史記」職官志 중 武官條에는 貴幢裨將이나 副將이 어떤 자위였는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태여 추측하자면 貴幢裨將은 貴幢將軍의 副將정도에 해당하는 존재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官昌은 누구의 副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역시 단위부대장의 副將이었다. 여기서 眞骨出身은 나이 15.6세에 군대에 나가더라도 말단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將軍의 副將 정도의 지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나아가 眞骨貴族의 초임 관직도 말단 관직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직이었던 것을 추측케 하여준다.

일반적으로 調府·倉府·禮部 등의 관부에는 令·卿·大舍·舍知·史 등의 5단계의 관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중 眞骨로서 초임에 나갈 경우 보통 어떤 직을 가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史나 舍知 등 말단 관직을 가졌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신라하대에 이르게 되면 진골의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진골들도 보다 낮은 관직까지 갖게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골귀족들이 속하여 활동하던 관부도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⁸⁵⁾ 禮部의 소속 관직 중 4頭品이면 長이 될 수 있던 司範署에 진골

85) 拙稿, 앞의 논문, 1983, pp. 48~49.

이 속하였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 간다. 그 밖에도 長의 격이 낮은 관청은 「三國史記」職官志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청은 아무래도 진골들이 속하여 활동하던 것은 아니었다고 헤아려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昌林寺無垢淨塔願記에 나오는

奉 敎宣修造塔使從弟金知行熊州祁梁縣令金銳……

同監修造使從叔行武州長史 金繼宗

同監修造使從叔新授康州泗水縣令 金勳榮

이라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⁶⁾ 昌林寺의 無垢淨塔願記는 국왕 慶膺(46대 文聖王)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탑을 만드는 데 관여 하였던 金銳는 舍知로서 熊州의 祁梁縣令이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는 王의 從弟였다고 한다. 그 외에 왕의 從叔인 金繼宗은 行武州長史였고 또 다른 從叔인 金勳榮은 新授 康州泗水縣令이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 왕의 從弟와 從叔이 縣令이 된 것과 從弟가 舍知의 관등을 가진 것은 대체로 진골귀족들의 관직과 관등의 하한을 이해할 자료가 되지 않나 한다.

文聖王(839-857)의 從叔·從弟는 분명히 진골신분을 가진자들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州의 長史와 縣令에 임명된 것은 신라하대 특히 40대 哀莊王 이후 벌어진 왕위계승전의 결과 왕실세력의 지위가 격하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위의 기록은 文聖王 17년(855)에 작성된 것으로, 이때에는 왕위계승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때이다. 그러나 왕위계승전을 하면서 왕족들의 지위는 격하되어 縣令·長史 등의 직과 舍知의 관등도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다. 이 경우 위에 나오는 文聖王의 從叔·從弟는 국왕이 아닌 다른 진골과 큰 차이가 없이 대우됐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진골귀족들의 정치적 활동 범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진골귀족들의 성원 수가 시간이 지남에 늘어난 때문일 것이다. 특히 신라중고시대에는 진골의 수가 많지 않았기에

86) 黃壽永, 앞의 책, 1976, p.148.

이들이 하위 관직·관등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중대를 거쳐 하대에 이르면서 진골의 규모가 늘어나 縣令 정도의 관직이나 舍知 정도의 관등까지도 이들 진골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야겠다. 그것은 진골성원 수의 증가보다 관직수의 증가가 적었기 때문이며 관등은 17등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진골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적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볼 수 있다.

- 1) 眞平五(六)年 甲辰 金堂造成 善德王代 寺初主眞骨歡喜師 第二主慈藏國統 次國統惠訓 次順律師云(「三國遺事」3, 塔像 4, 皇龍寺丈六條)
- 2) 大德慈藏 金氏 本辰韓眞骨蘇判 茂林之子(「三國遺事」4, 義解 5, 慈藏定律條)

위의 기록을 보면 歡喜師는 분명히 眞骨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慈藏도, 그의 父가 眞骨 茂林이었기에, 진골신분을 가졌다고 믿어진다. 이들은 모두 皇龍寺의 寺主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진골출신 인물들이 寺主로 있던 황룡사는 국가의 사찰이며 왕실의 사찰이었다.

新羅第二十四 眞興王即位十四年 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乃置爲佛寺 號黃龍寺 至己丑年 周圍牆宇 至十七年 方畢……(「三國遺事」3, 塔像 4, 皇龍寺 丈六條)

위의 기록에 나오는 黃龍寺는 皇龍寺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皇龍寺는 聖骨王인 眞興王이 축조토록 하였다. 그밖에 皇龍寺에는 丈六像과 九層塔 등이 국왕의 명에 의하여 일찍부터 만들어졌다.⁸⁷⁾ 이로써 보면 皇龍寺는 왕실사원이며 국가 최고의 사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皇龍寺에는 眞骨들을 寺主로 모셨음은 이미 보았다. 그런데 신라의 사찰들은 寺主의 신분에서 따라 그 격이 달랐다고 여겨진다.⁸⁸⁾ 이는 신라의 사찰들이 골품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준다. 그

87) 「三國遺事」3, 塔像 4, 皇龍寺丈六 및 皇龍寺九層塔條.

88) 이와 관련시켜 別稿를 준비 중이다.

중 진골신분은 황룡사와 같은 국가 최고 사찰의 寺主가 되었기에 신라 불교안에서 진골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 따른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황룡사의 寺主로 이야기되는 國統은 그 밑의 州統·郡統을 비롯한 僧官의 우두머리가 되어 신라 불교의 교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한편 진골귀족들은 비록 승려가 되지 않더라도 四天王寺成典과 같은 寺院成典의 長이 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는 四天王寺를 비롯하여 奉聖寺·感恩寺·奉德寺·奉恩寺 등의 寺院成典의 衿荷臣(令)은 그 관등이 大阿湊에서 角干까지에 이르렀던 자들이 임명되었기에⁸⁹⁾ 이들 사원성전의 책임자는 진골이 임명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⁹⁰⁾ 이로써 보면 물론 황룡사는 국가 최고의 사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밖에 국가에서 관장하던 四天王寺와 같은 사찰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사찰의 창건·운영에 진골귀족이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여하튼 불교 안에서도 진골출신 승려는 높은 자리와 중요한 절에 관계되었기에 그들의 활동은 그 밑의 신분에 속한자들 보다는 한결 중요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신라시대에는 승려들로 이루어진 신분층이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승려들의 혼인이 대체로 허용되지 않았기에 이들이 다음 세대의 승려를 재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려들은 주로 골품신분을 가진 자들로부터 공급되었다. 그 결과 신라의 승려들은 골품제의 규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단 승려가 되면 불교의 힘에 의하여 골품제의 제약을 승려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적게 받았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은 진골의 정치·사회·종교적 지위는 결국 진골신분의 지위를 더욱 높여주는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해야려진다. 국가통치력이 유지될 때 이같은 진골귀족들의 지위는 하나의 자연적인 질서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야려진다. 그에 따라 진골들은 특권을 유지하였고 그 밑의 신분에 속한 자들에게 예속과 복종을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런데

89) 「三國史記」 38, 雜志 7, 職官 上에 나오는 위의 여러 寺院成典條 참조.

90) 예컨대 四天王寺成典의 최고 책임자의 관등은 大阿湊에서 角干까지로 되어 있어 그것을 알 수 있다(「三國史記」 38, 雜志 7, 職官 上, 四天王寺成典條).

신라하대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골품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때 각지에는 독자적인 세력가들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에 의하여 반란이 일어났고, 자연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골품질서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신라는 끝내 멸망하게 되었다.

V. 眞骨의 勢力基盤

이제 眞骨貴族들의 세력기반이 어떠한 것이었나 보기로 한다. 眞骨의 세력기반은 대체로 그들이 가지는 여러 특권에 연유한다고 믿어진다. 이에 진골의 신분적 특권, 정치적 특권, 경제적 특권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진골의 신분적 특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골품사회 안에서 신분적인 특권은 출생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결국 혈연의 중요성을 뜻하며, 그 중에서도 특정 씨족, 가계 성원들의 우월한 지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상고시대의 왕들을 배출한 씨족들은 朴氏族·昔氏族·金氏族이었다. 그들 중 麻立干時代를 거치며 昔氏族의 성원들은 신라의 지배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그에 비해 朴氏族은 赫居世에서 阿達羅王까지의 왕을 배출하였고, 智證王에서 眞智王까지의 왕비를 배출한 바 있다. 朴氏族은 그후 신라말까지도 그 세력을 유지하여 53대 神德王, 54대 景明王, 55대 景哀王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들 신라하대의 朴氏王들은 신라상대 朴氏의 마지막 왕이었던 阿達羅王의 후손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⁹¹⁾ 이들 朴氏族들은 왕을 배출할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할 때도 葛文王을 배출하고 있었다. 여기서 高句麗의 前王族과 王妃族 출신의 適統大人은 古雛加의 칭호를 가질 수 있었고 宗廟를 세울 수 있었다.⁹²⁾ 宗廟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각 집단은

91)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神德王 즉위조.

92)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결속을 다지고 그 집단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신라의 葛文王도 高句麗의 古雛加와 비교될 수 있다.⁹³⁾ 이들 갈문왕이야말로 朴氏族의 세력을 유지하는 구심점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물론 朴氏族들이 항시 葛文王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신라중대부터는 葛文王制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⁹⁴⁾ 이때에는 대체로 金入宅 중의 일부에 朴氏族들이 살고 있어 그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야려진다. 그러면서도 신라 진골귀족 중에서 朴氏族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체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진골신분을 가졌던 金氏族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關智에서 비롯했다는 金氏族 중에는 13대 味雛王, 17대 奈勿王, 22대 智證王 그리고 29대 武烈王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그 중에도 奈勿王의 후손이라 하는 居柒夫(5世孫), 異斯夫(4世孫), 斯多舍(7世孫) 등이 주목된다. 여기서 斯多舍는 분명히 진골신분을 가졌기에 다른 인물들도 진골신분에 속하였을 것이다. 그후 왕위가 智證王을 거치며 智證王을 기점으로 하나의 가계집단이 만들어졌고 그에 속한 자들도 골신분을 갖게 되었다. 法興王 이후 신라 중고시대에는 王을 중심으로 聖骨集團이 존재했고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골집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밀려난 金氏族은 진골신분을 갖게 되었다.⁹⁵⁾

한편 武烈王 이후에는 성골이 소멸되었기에 왕을 비롯하여 그의 친척들이 진골 중에서는 중요한 집단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후 신라하대를 여는 37대 宣德王은 奈勿王의 10世孫이라 하고 38대 元聖王은 12世孫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신라하대에 왕위를 차지한 金氏族이 智證王이나 武烈王系와는 다른 奈勿王系 후손집단 출신인 것을 나타내준다.

여하튼 신라시대의 진골들은 왕과의 관계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그 세력의 정도가 정해졌다고 믿어진다. 혈연적으로 왕의 親屬일수록 정치적·사

93) 李基白, 앞의 책, 1974, pp.17~18.

94) 李基白, 앞의 책, 1974, p.23.

95) 拙稿, 앞의 논문 1983, pp.50~55.

회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해야려진다. 이들 왕과 가까운 진골들일수록 王宮 또는 別宮에 거주했고, 점차 멀어질수록 王都·王畿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거주지역 자체가 왕의 거처와 멀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들 金氏族의 진골귀족들은 왕과의 관계에 의하여 관직을 가졌고 정치적으로 진출할 기회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 밖에 金仇亥에서 비롯하는 加耶系 진골귀족과 安勝에서 비롯한 高句麗系 진골귀족 집단이 있다. 후자의 경우 安勝을 제하고는 신라 역사상 그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알 수 없다. 그에 비하여 金仇亥의 막내 아들인 武力과 孫子인 舒玄 그리고 曾孫인 金庾信은 군사적 elite로서 신라 지배세력 안에서 그 지위를 굳혔다. 거기에 더하여 舒玄과 萬明夫人의 혼인은 그것을 통하여 가야계 진골집안을 신라왕실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인척관계는 金庾信과 金春秋 사이의 중복된 혼인관계로 인하여 한층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 金庾信의 嫡孫인 允中은 33대 聖德王의 은혜를 입어 大阿湊까지 올랐으나 왕의 친족들로부터 질투를 받았다.⁹⁶⁾ 이러한 일이 지속되면서 신라 중앙정부에서 차지하는 金庾信系 후손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는 격하되어 갔다.

이들 진골은 정치적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도 왕과의 관계가 중요하였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볼 수 있다.

適台輔有關 門閥當議 累徵不赴王乃勅曰 不就斬之 藏聞之曰 吾寧一日持戒而死 不願百年破戒而生 事聞 上許令出家……(「三國遺事」 4, 義解 5, 慈藏定律條)

慈藏은 眞骨 蘇判 茂林의 아들이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당시 台輔가 어떤 관직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善德王 시에 門閥을 가지고 논하여 慈藏을 그 자리에 앉히려 했던 것이 주목된다. 이때 진골귀족들이 정치적인 진출을 하는데 있어 門閥이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인사의 한 원칙으로 그 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다.

96) 「三國史記」 43, 列傳 3, 金庾信 下の 允中관계 기록 참조.

그것은 允中을 가까이한 聖德王에 대한 간언 중에 “종실척리에 호인이 어찌 없겠읍니까만 오직 소원한 臣을 홀로 부르니 어찌 親者를 친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읍니까”⁹⁷⁾라는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金庾信의嫡孫인 允中은 왕실과는 그다지 먼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金庾信과 武烈王 사이의 혼인관계를 가지고 보면 聖德王과 允中の 관계는 5촌·6촌 사이가 된다. 물론 당시는 父系制社會였기에 인척관계의 친근관계보다는 父系親들이 더 중요하였다고 보여지기에 允中은 聖德王과의 인척관계보다는 金庾信의 功을 바탕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절국 왕을 중심으로 宗室·戚里에 있는 친속들이 정부의 주요 관직을 가지게 되었다.⁹⁸⁾ 바꾸어 말하여 이들 진골세력은 관직을 가졌기에 신분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것이기보다 왕족인 金氏族들이 원래의 신분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관직도 차지한 것이 된다. 이들 진골귀족은 정부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였고 자연 그들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여하튼 정치적으로 최고의 관직을 차지한 진골들은 그와 같은 정치적 진출을 통하여 그 세력 기반을 다져나갈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진골귀족의 실력기반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보수이다. 첫째로 진골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문제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들을 주목할 수 있다.

- 1) 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持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三國史記」4, 法興王 19년)
- 2) 七年……五月 敕賜文武官僚田有差(「三國史記」8, 神文王 7년)
- 3) ①九年 春正月 下敕 罷內外官祿邑 逐年賜租有差 以爲恆式(「三國史記」8, 神文王 9년)
②十六年……三月 除內外群官月俸 復賜祿邑(「三國史記」9, 景德王 16년)
- 4) 頒馬法 凡一百七十四所 屬所內二十二 官十 賜庾信太太角千六 仁問太角千五 角千七人各三 伊淪五人各二 蘇判四人各二 波珍淪六人 大阿淪十二人各一 以七十四

97) 註 96 참조.

98) 拙著, 앞의 책, 1980, p.146 표(V나)의 참조.

所 隨宜賜之(「三國史記」 6, 文武王 9 年)

- 5) ①論功 斯多舍爲最 王賞以良田及所虜二百口 斯多舍三讓 王強之 乃受其生口放爲良人 田分與戰士 國人美之(「三國史記」 4, 眞興王 19 年)

②定方得軍粮便罷遷 庚信等 聞唐兵歸亦遷 渡瓢川 高句麗兵追之 廻軍對戰 斬首一萬餘級 虜小兄阿達兮等 得兵械萬數 論功 中分本使富財貨・田莊・奴僕 以賜庚信・仁問(「三國史記」 6, 文武王 2 年)

③多十月二十二日 賜庚信位太大角干 仁問大角干 已外伊湊將軍等 並爲角干 蘇判已下 並增位一級(「三國史記」 6, 文武王 8 年)

신라시대의 귀족들은 食邑(사료 1), 文武官僚田(2)을 지급 받았다. 그리고 神文王 9 년에 内外官의 祿邑을 없애고 해마다 租를 주었다고 한다(2). 그런데 景德王 16 년에는 内外官의 月俸을 없애고 祿邑을 다시 준 것으로 되어 있다(3②).

이로서 보면 신라의 관리들은 祿邑을 받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馬法도 지급받았다(4). 이러한 토지는 진골 뿐 아니라 나머지 귀족세력들에게도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진골귀족들에게 더 많은 면적의 토지가 지급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食邑・祿邑・文武官僚田・馬法の 지급은 피지급자의 관등에 따라 행해졌다고 해야려진다. 그것은 관등 자체가 관리들에 대한 보수지급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쉽게 짐작이 간다. 실제 馬法の 지급은 관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사료 4).

위와 같은 토지는 관리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의 댓가로 지급된 것으로 정상적인 토지의 지급이었다. 그런데 전쟁에서 공을 세운자들에게 특별히 토지가 지급되는 예가 있다(사료 5). 加耶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斯多舍에게 良田을 지급하려 했으나 그가 마다하며 關川의 不毛地를 받기를 원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5①). 이로서 보면 진골은 戰功과 같은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을 세울 때 토지를 지급받을 수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지급받은 토지도 진골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진골귀족들의 경제적 기반 중에는 토지 이외의 것도 있다. 그 중

에는 內外官에게 지급되었다는 租 또는 月俸이 있다. 神文王 9년에는 內外官에게 해마다 租를 주었다고 하는데(사료 2①), 景德王 때에는 月俸을 준 것으로 나오고 있다(2②). 神文王 때에 逐年賜租한 것이 景德王 때에는 月俸을 없앤 것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神文王 때에 해마다 租를 주던 것이 그 이후 언제인가 月俸으로 바뀌었거나, 神文王 때에 租를 주었다는 것도 실은 月俸을 준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이에 대한 단정은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들 租나 月俸이 田貢을 포함한 신라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이같은 租 또는 月俸은 祿邑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주어졌다.⁹⁹⁾ 그리고 이 역시 관등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大阿湊 이상 올랐던 田貢들은 보다 많은 租나 月俸을 지급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田貢의 경제적 기반은 노비들이다. 田貢귀족들은 원래부터 전래하는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戰功 등으로 인하여 노비를 받은 예들이 있다. 斯多含은 加耶와의 전투에서 포로로 한 2백명을 노비로 지급받았으나 모두 方良하여 주었다(사료5①). 그리고 金庾信과 金仁問은 本彼宮의 재화와 田莊·奴僕을 지급받은 바 있다(사료5②). 노비는 당시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 중 대체로 토지 못지 않는 중요성이 큰 존재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신라하대의 재상가에는 奴僮이 3,000 이었다는 기록과 같이¹⁰⁰⁾ 田貢귀족들 중에는 많은 수의 노비를 거느린 자들이 있었다. 동시에 牛馬甲兵을 그만큼이나 가지고 있던 田貢귀족들의 노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기반뿐아니라 군사적 기반도 되었다. 따라서 이같은 노비들을 군사적 기반으로 하여 신라하대의 왕위 계승전이 벌어진 것을 생각할 수 있다.¹⁰¹⁾

田貢귀족들이 소유하게 된 토지·노비는 대를 이어 전해졌다고 볼 수 있

99) 이러한 때에도 전해오는 토지는 田貢귀족들이 계속 私有하였을 것이다.

100) 「唐書」東夷傳 新羅條.

101) 李基白, “新羅私兵考”, 「歷史學報」9, 1957; 앞의 책, 1974, pp. 223~261.

다. 그것은 臨海公(金仁問)이 受封하였던 땅에 그의 후손이었던 山中宰相 金昕이 朗慧和尚에게 聖住寺라고 하는 절을 중건토록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⁰²⁾ 金周元의 孫子가 되는 金昕(표 [다])이 金仁問에게 주어졌던 땅에 절을 중건토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땅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토지는 신라시대의 私田의 존재를 말해 주는 것이다. 실제 崇福寺碑에 “...品則雖云王土 且非公田於是括以爾封 求之善價 益丘隴餘二百結 酌稻穀合二千石”이라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¹⁰³⁾ 崇福寺를 지은 터가 公田이 아니라 좋은 값으로 그것을 구입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분명히 私田의 존재를 말해 주는 것이다.¹⁰⁴⁾

당시 진골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은 국가의 힘으로 보장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公田이 아니었던 땅을 사서 崇福寺를 지은 예와

三月……出成貞一云嚴貞王后 賜彩五百匹 田二百結 租一萬石 宅一區 宅買康申公舊居賜之……(「三國史記」8, 聖德王 15년)

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즉 聖德王의 妃인 成貞王后를 내보낼 때 康申公의 옛집을 사서 준 것으로 되어 있다. 康申公의 신분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거의 틀림 없이 진골 정도의 신분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진골의 집을 국왕이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진골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결국 이같은 土地·奴婢·歲租·月俸 등을 지급 받았던 진골귀족들은 그 같은 경제적 실력을 후손들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진골귀족 자체의 경제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진골귀족들이 토지뿐 아니라 많은 수의 노비를 거느려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02)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1919, pp. 77~77.

103) 「朝鮮金石總覽」, 1919, p. 121.

104) 李佑成, “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 「曉城 趙明基博士 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1965, pp. 217~225.

이것을 바탕으로 신라하대에 왕위계승전을 벌이게 되었다. 토지·노비 소유에 의한 진골의 경제력은 왕위까지도 교체할 정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왕위계승전을 통해 승리한 집단은 토지·노비 등의 경제적 특권을 더 많이 장악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다음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七月三日 大恭角干賊起 王都及五道州郡並九十六角干相戰大亂 大恭角干家亡 輸其家資寶帛于王宮 新城長食火燒 逆黨之寶在沙梁牟梁等里中者 亦輸入王宮 亂彌三朔及息 被償者頗多 誅死者無算也……(『三國遺事』2, 紀異 2, 惠恭王條)

위의 기록을 보면 반란을 일으켜 패한 진골귀족들은 물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왕위계승전에서 승리한 세력은 반란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결과 신라하대 진골귀족들의 왕위계승전은 진골귀족들의 정치·경제·군사적 기반을 크게 뒤바꾸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Ⅵ. 眞骨集團 內的 勢力關係

진골귀족들은 金入宅과 같은 특정 거주지에서 살았고, 또 그와 관련된 가계집단에 의해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신라에는 현재 그 수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개의 진골귀족 가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진골 가문사이에는 정치적 지위, 경제적 실력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세력의 우열이 갈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신라 진골귀족들의 우열관계에 대한 문제를 알아 보기로 한다. 진골세력 안에서의 우열은 가문 사이의 문제도 있고, 같은 가문 안에서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서 가문(가계)간의 서열관계 또는 씨족간의 서열관계 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그런데 진골 가문, 씨족의 서열이 나뉘는 까닭은 대체로 왕과의 친근관계, 정치적 진출관계, 거주지의 위치 문제 등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해야겠다.

먼저, 왕과 진골귀족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신라시대의 왕위는 朴氏族에서 昔氏族으로 다시 金氏族으로 이어졌다. 그 중 昔氏族은 奈勿王 이후 신라사에서 그 지위를 잃었다. 그리고 奈勿王 이후 金氏族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金氏族의 지위가 중요해졌다. 특히 法興王이 律令을 반포하여 골품제를 만들 때 金氏族 중 奈勿王系의 후손들은 대체로 진골귀족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奈勿王系의 후손들 중에도 중고시대에는 智證王의 직제 중 성골집단의 범위를 벗어나 진골이 된 세력이 진골들 중에서는 중요한 세력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中代의 경우에 진골왕의 가족은 왕과 그 자식들로만 구성되면서 나머지 왕의 형제 이상의 범위에 있던 자들은 왕으로부터 방제화될수록 그 지위가 낮아지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朴氏族들은 智證王에서 眞智王까지 왕비를 배출하여 그 세력이 존재한 것은 이미 살렸다. 그러나 중고시대의 박씨왕비들은 정치적 세력이 약화된 박씨족 출신이었다. 이들 박씨족은 그 세력이 김씨족보다 훨씬 약한 것이었지만 그후에도 진골신분을 가질 수는 있었다. 후일 신라하대에 元聖王系 金氏王族들이 왕위계승전을 벌여 그 세력이 분열되었다. 이같이 축소·분열된 金氏勢力은 朴氏族보다도 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54대 神德王이 朴氏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보아 왔다.

그 밖에 신라의 왕족이 아니면서 진골로 편입되었던 세력으로 加耶系 金仇亥의 세력과 高句麗系 安勝의 세력이 있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이들 중 安勝集團은 그후 신라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세력이 곧 미약해졌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金庾信은 그의 지위를 크게 일으킨 바 있다. 첫째, 그의 祖父인 武力과 父인 舒玄 때에 이미 將軍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여 군사적 elite로서의 길을 닦은 바 있다. 특히 金庾信은 3국통일에 있어 제 1의 군사적인 공을 세웠다. 둘째 金庾信은 武烈王과 중북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

로서 金庾信 생시에는 그 개인의 지위가 왕 다음 가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冬十月二十二日 賜庾信位太角干 仁問大角干 已外伊湊將軍等 並爲角干 蘇判已下
並增位一級(「三國史記」 6, 文武王 8년)

이라는 기록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金庾信은 文武王의 동생인 仁問보다 높은 관등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대우를 해 준 것은 金庾信 개인에 대한 것으로 그의 후손들은 그후 왕의 친족들보다 그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 金庾信의 집안도 그의 후손인 允中이 聖德王으로부터 여러 차례 恩顯을 입자 왕의 친족들로부터 질투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세력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¹⁰⁵⁾

여기서 진골세력 중에서도 왕에 가까운 집단이 중요한 집단으로 되었던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¹⁰⁶⁾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중요한 집단으로 되었다. 이때 前王의 측근세력들 중 방제화된 집단은 그 세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방제화되는 세력들의 거주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라중고시대 聖骨王이 있을 때는 王宮에 王과 그 형제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성골집단이 살았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왕과 그 형제가 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성골집단이 만들어지고 전왕의 형제와 그 가족은 왕궁을 벗어난 다른 곳 또는 宮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였다고 생각된다.¹⁰⁷⁾ 실제로 眞智王 재위시 그의 아들이었던 龍春과 銅輪太子의 아들이었던 白淨(眞平王)도 모두 왕궁의 성골거주구역에 살았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眞智王은 政亂荒煙하여 國人이 廢하였다. 그리고 白淨이 왕으로 되며 성골 거주구역 안에는 白淨과 그의 동생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살게 되었다. 이

105)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의 變革”, 「社會科學」 2, 1958; 앞의 책, 1974, pp. 247~252.

106) 李基白, “新羅 執事部의 成立”, 「震檀學報」 25, 26, 27, 1964; 앞의 책, 1974, p. 164.

107) 拙稿, 앞의 논문, 1983, pp. 50~55.

때 眞智王의 아들이었던 龍春과 그 가족은 성골거주구역에서 밀려나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물론 그곳은 성골거주구역일 수는 없으나 宮으로 불리던 곳일 수는 있다. 이로써 보면 진골 중에도 방제화된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원래 거주지에서 떠나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현상이 있었음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이때 방제화의 정도가 심할수록 왕의 거처로부터 먼 곳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또는 왕궁으로부터 먼 곳에 거처를 정할수록 정치적진출의 기회가 줄어든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신라중고시대에는 대부분 진골이 왕도에 거주하였으나 일부 진골이 6부 지역에도 거주하였다. 그중 牢梁部 지역에 거주하던 朴氏族은 진골로서는 정치적인 격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智證王과 眞興王의 왕비를 배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十九年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三國史記」 4, 眞興王 19년)

위에 나오는 貴戚子弟는 아무래도 왕족들로 진골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 람들이고 六部豪民은 6頭品까지의 두품 신분을 가진자들로 여겨진다. 이로써 보면 小京에도 왕족들이 이주한 것이 된다.

그런데 신라중대를 거쳐 下代에 들어선 후 왕위계승전이 벌어지는 과정에 지방의 州·郡 지역으로 이주하는 진골세력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溟州지역에 정착한 金周元系의 일부 집단이 있다. 이들은 그후 그 지역에 정착하여 점차 地方豪族化 하였다.¹⁰⁸⁾ 따라서 일단 지방에 정착한 진골귀족은 시간이 지나며 그 신분적 특권을 누리기 어렵게 되었고, 자연 진골로서보다는 지방호족으로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들 지방 이주 진골귀족은 중앙정부에 대해 순종을 하기보다 점차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되었다. 그 결과 신라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점차 어려워졌던 것이다.

그러면 진골귀족들의 거주지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08) 本稿의 註 52 참조.

앞에서 잠시 왕위계승전의 결과 거기서 패한 세력이 지방이주를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下代로 내려오며 진골귀족의 수적 증가와 진골이 차지할 수 있는 관직 수가 제한되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한다. 그 결과 진골귀족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진골들은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왕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에 크게 좌우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그 거주지가 왕궁과 얼마나 가깝고 먼가 하는 문제도 이들 진골의 정치적 진출에 깊은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여겨진다.¹⁰⁹⁾

한편 신라중대 이후 왕의 신분은 진골로 되었다. 그런데 朗慧和尚碑에는 聖而라는 기록이 있다.¹¹⁰⁾ 이러한 聖而는 聖骨은 아니다.¹¹¹⁾ 聖而는 진골 왕과 다른 진골귀족을 비교하여 진골왕을 한층 격을 높여 부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보면 진골 중에도 왕은 특별히 대우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밖에 실제 진골이라 하여 모두 동등한 지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진골 중 일부가 power elite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신라중고시대에는 眞骨로서 左位者는 牙笏을 들도록 하여 그 신분을 표시한 적도 있다.¹¹²⁾ 그러나 신라하대에는 왕의 가까운 친척으로 縣令이 되는 예도 있었다.¹¹³⁾ 이로써 보면 신라하대의 진골로서 power elite가 된 자들은 上大等·中侍 등의 직을 거친자들이거나 大阿湊 이상의 관등을 가진자들에 한 하였다고 믿어진다.

맺 음 말

法興王은 律令을 반포하여 骨品制를 편제하였다. 이같은 骨品身分 중의

109) 金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도 한 예는 될 수 있다(『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元聖王 즉위조).

110) 『朝鮮金石總覽』 1919, p. 74.

111) 성골은 眞德王을 마지막으로 신라사회에서 이미 소멸되었다.

112) 『三國史記』 5, 新羅本紀 5, 眞德王 4 年條.

113) 黃壽永, 앞의 책, 1976, pp. 148~149.

한 신분으로 眞骨身分이 있었다. 진골신분을 가진 집단은 신라사회 안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특권을 누리던 신분층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진골귀족집단의 성격도 시대적인 변화를 겪은 바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같은 진골신분의 성격·기능 등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요약·정리하여 결론에 대신 하기로 한다.

우선 진골세력의 수적 확대에 대하여 볼 수 있다. 法興王이 골품제를 편성하여 진골신분을 만들었을 때 진골을 배출하던 가계·가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奈勿王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몇몇 가계들과 前王族이며 왕비를 배출하던 朴氏族의 일부 가계 성원들이 진골신분을 가질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신라의 정복사업 수행 중에 가야제와 고구려제의 왕족 중 일부 세력이 진골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새로이 진골로 편입된 피정복국의 왕족들은 그후 신라사회 안에서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奈勿廢立干의 후손으로서 진골이 되었던 金氏族들이 그 세력을 키워 진골집단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비중이나 정치·사회적 지위도 크게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시의 전국민 중에서 진골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단지 진골로서 정치의 일선에 나선 집단의 수적 증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시켜 文武王 9년 馬防을 준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¹¹⁴⁾ 그에 따르면 文武王 9년 당시 太阿飡 이상의 관등을 가지고 있으며 馬防을 분배 받았던 자들은 太대角干 1인, 大角干 1인, 角干 7인, 伊飡 5인, 蘇判 4인, 波珍飡 6인, 大阿飡 12인으로 나오고 있어 모두 36명이 된다. 太阿飡 이상은 진골만이 차지할 수 있던 관등이지만 당시 이들만이 관직을 가진 진골집단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보다 밑의 관등을 가진 진골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太阿飡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들은 행정관청의 수이나 군대의 將軍이 되어

114) 「三國史記」 6, 新羅本紀 6, 文武王 9년조.

대체로 power elite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36대 惠恭王대에는 大恭角干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王都 및 5道州郡의 96角干이 相戰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¹¹⁵⁾ 이때 96角干이라는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신라중대 말에 이르게 되면 진골로서 높은 관등을 가진 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진골 귀족에게는 族降 등의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신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권에 의하여 그 세력집단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다. 진골귀족의 수는 신라하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그것은 중대에 진골 신분을 유지하여 오던 가문들이 변성하면서 축소되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집단은 元聖王系의 후손집단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진골귀족이 무한정 늘어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다음은 진골귀족들의 정치적 활동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신라중대까지만 하여도 진골의 수가 많지 않았기에 진골들은 대체로 높은 관직들을 차지하였다고 해야려진다. 특히 각 행정관청의 장관 중에서도 승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진골이 속한 관청도 그 장이 진골인 일부 상급관청에 한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하대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바뀌게 되었다. 이와 관련시켜 앞에서 제시했던 昌林寺 無垢淨塔願記의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그안에 보면 탑을 만드는 데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의 從弟·從叔들도 있다. 膺廉(文聖王)은 47대 憲安王의 사위였다. 憲安王은 禮英의 아들인 均貞의 아들이었고 膺廉은 禮英의 다른 아들인 憲貞의 증손이었다. 이같은 膺廉의 從弟·從叔이라면 진골귀족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관등이 大舍 정도였고 관직은 縣令이거나 州의 長史 정도였다. 이는 신라하대에 이르러 진골귀족들 중에 그것은 왕족 중에서 정치적 지위가 낮아진 사람들이 있었음

115) 「三國遺事」 2, 紀異 2, 惠恭王條. 그런데 「三國史記」 9, 新羅本紀 9, 惠恭王 4년 조에는 “一吉澹大恭與弟阿澹大兼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이라고 나와 있어 「三國遺事」의 기록과는 다르다. 어쩌면 「三國遺事」의 기록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물론 신라하대에 진골귀족의 수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라하대 진골귀족들 중 元聖王系의 인물들에 의한 왕위계승전이 벌어지며 중앙의 다른 진골들도 왕위계승전에 참가하였던 사실과 연관시켜, 당시 진골귀족의 정치적 성격이 변한 것을 뜻한다. 즉 신라중대까지만 하여도 진골귀족 중에는 武烈王의 직계귀족 중에서만 왕을 배출하였기에 나머지 왕족들은 왕위계승을 꿈꿀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하대에 이르게 되면 元聖王系의 보다 폭 넓은 귀족들 중에서 실력으로 왕위를 장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왕위계승전이 일어날 때마다 元聖王系가 아닌 다른 진골귀족들도 가담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진골귀족의 지위 상승적 측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한 세력은 그 지위가 몰락하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하대 진골귀족의 성격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그들의 지방 이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신라하대에 이르게 되면 중앙의 진골귀족들 사이에 왕위계승전이 벌어진 바 있다. 그 과정에 패배한 진골귀족들은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들 지방이주 진골귀족들은 원래부터 그들 집안에 전해오고 있던 토지·莊畝가 있던 곳으로 낙향하였을 것이다. 일단 지방으로 이주한 진골귀족들 중에는 재기하여 중앙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지방에 살며 점차 지방호족화하여 갔다.

이들 진골귀족의 지방 이주는 지방 세력의 성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¹¹⁶⁾ 이와 관련시켜 몇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지방에는 전통적으로 촌주층이 호족세력으로 있어 왔다. 그런데 신라하대에 진골귀족들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촌주세력과 낙향 진골귀족들 사이의 세력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진골귀족들은 지방에 토착기반이 없었으나 중앙에

116) 물론 그러한 지방세력의 변화는 진골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두품귀족에 의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골귀족들의 영향이 가장 컸으리라 여겨진다.

서 가지던 정치적 지위와 실력을 바탕으로 지방에 정착하여 신라말에는 지방 호족으로 자리잡아 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들 낙향 진골귀족 출신 호족세력보다 촌주층의 호족세력이 우월한 세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진골귀족의 지방 이주로 인하여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정치적 기반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단 지방으로 이주한 진골귀족들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정치적 실력은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 기반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莊舍에 이주한 진골귀족은 비록 규모는 줄어 들 수 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 지방에서의 실력가가 되기에는 충분한 기반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진골집단으로서 王京에서 누리고 있던 문화적인 수준을 이들 낙향진골은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가지는 중앙의 진골귀족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낙향 진골귀족들은 반정부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록 중앙정부의 지방통치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 더우기 이들 낙향진골세력은 지방의 토착 촌주세력을 자극하여 독자적으로 지방호족화하게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배를 벗어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국가통제력이 축소되어 조세수취, 인력동원 등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眞聖女王대의 조세수취 독촉도 그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¹¹⁷⁾

골품제 유지의 구심점인 왕의 지위를 갱탈하는 왕위계승전이 벌어진 신라하대에는 골품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는 진골층의 일부만이 power elite가 되고 많은 진골귀족들은 하급관리로까지 전락하였고 또 왕위계승전에서 밀려난 세력은 지방으로 이주하여 촌주층들과 더불어 반정부적 지방 호족세력으로 자리잡아 신라의 멸망을 촉진하였다.

117)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眞德王 3년조.

그런데 진골귀족의 수적증가와 그들에 의한 낮은 관직·관등의 점유는 6두품이하의 귀족들이 관직을 차지할 기회를 뺏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신라하대의 6두품세력들이 반정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 결국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진골귀족의 성격변화는 신라의 골품제에 의한 통치질서를 붕괴시켰고 신라의 멸망을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적은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리가 따랐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소 중복되는 서술도 있었다. 기탄없는 질정을 바랄 뿐이다.